

「제7차 교육과정 인권관련내용 분석」 집필진 워크숍

일시: 7. 24.(수) 14:00 ~ 20: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 진행 순서 -

I부. 사업설명 14:00-14:50

1. 인사말 (위원장)
2. 사업 취지와 목적 설명 (담당 사무관)
3. 학교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실행방안 (강순원 교수)

II부. 인권개념 및 분석모형의 이해 14:50-16:00

1.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헌법 (허종렬 교수)
2. 분석 기준으로서의 인권유형과 인권개념 및 내용 (박효종 교수)
3. 초중등학교 인권관련내용 분석모형 (이명준 박사)

- 휴 식 (16:00 - 16:15) -

III부. 팀별 워크숍 16:15-17:45

1. 교과목별 분석실제 예시
: 학교급별 집필자 2인씩 분석에 발표
2. 분석 모형에 따른 각 교과목별 분석 및 토론
3. 교과목 특성에 따른 분석모형 적용의 문제점 도출

IV부. 종합 발표 및 집필 방향 확정 17:45-18:30

〈 목 차 〉

제1부

인권관련내용 분석보고서 집필지침서(인권교육담당관실)	1
학교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실행방안 (강순원)	8

제2부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헌법 .(허종렬)	13
인권유형과 인권개념 및 내용에 관한 고찰: 분석기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박효종)	26
초등학교 교과서 인권관련내용 분석모형 (이명준)	45

제3부

초등학교 국어과 인권내용분석 (강희철)	49
초등학교 음악과(3학년) 인권내용분석 (정순원)	51
중학교 도덕과 인권내용분석 (황기현)	54
중학교 음악과 인권내용분석 (김택환)	65
고등학교 사회 인권내용분석 (임상수)	69
고등학교 기술·가정 인권내용분석 (최준화)	74

부록

<input type="checkbox"/> 집필진 연락처	81
<input type="checkbox"/> 2종 도서 판매순위별 출판사명	83
<input type="checkbox"/> 인권관련내용 분석을 위한 헌법기본권 조항분류 (강희철)	85

제7차 교육과정

인권관련내용 분석보고서 집필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I. 목 적

- 학교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관련내용 분석이 요청됨
-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에 반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검토함
- 각급학교의 인권교육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기본지침서 제작에 기초 자료가 됨
- 교원연수 과정에서 활용함
- 인권 및 인권교육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

II. 방 침

- 총론과 각 교과별(주요 10개 교과)로 편찬하며, 학교급별로 합본한다.
- 분석대상 학년은 국민교육기본공통과정에 의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 총 10년으로 한다.
- 분석대상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있는 경우는 국정교과서 분석을 원칙으로 하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사용빈도 1, 2순위 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하되, 내용이 크게 대별되는 부분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 교과별 원고 작성자를 선정하고, 원고의뢰 및 집필과정의 업무는 집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인권교육담당이 주관한다.
-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지도에 현장교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필한다.

- 각 교과에 인권에 반하는 내용이 모니터링 된 경우는, 교육부와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별도 표시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Ⅲ. 보고서 체제

1. 체제 및 규격

구 분	내 용	비 고
보고서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관련 내용 분석보고서 I ~ III 제 I 권: 초등학교 교육과정 인권관련 내용 분석 보고서 제 II 권: 중학교 교육과정 인권관련 내용 분석 보고서 제 III 권: 고등학교 교육과정 인권관련 내용 분석 보고서 	보고서 명은 변경 가능
규 격	4 × 6배판 (187mm × 257mm)	
면 수	각 권 250매 내외 (총 750매 정도)	
지 질	표지	아트 200g 정도, 2도
	내지	미색 모조 80g
인 쇄	옵셋 인쇄, 15급(10.5p)	
제 본	좌철, 무사무선철	

2. 주요내용 구성

I. 교육과정 인권내용 분석의 원리: 서론

- 가. 인권관련내용 분석의 필요성
- 나. 초중등 인권교육의 목적 및 방향
- 다. 각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한 서술(특성, 통합성, 이질성 등)
- 라. 분석보고서의 목표 및 방향(분석틀, 분석대상 교과목 선정이

유, 활용 방안 등 포함)

II. 각 교과별 인권내용 분석 (초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공통형식으로)

가) 과목의 목적, 특성, 내용에 대한 요약

나) 학년별 내용 분석

① 인권내용의 오류지적, 분석

② 인권서술의 미진, 오류분석, 서술

다) 분석 결과에 대한 대안

라) 분석 결과에 터한 인권교육의 문제점

※ 학교급별 분석대상 교과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석교과	1. 통합교과 1) 바른생활 2) 슬기로운 생활 3) 즐거운 생활 2. 국어 3. 도덕 4. 사회 5. 수학 6. 과학 7. 실과 8. 체육 9. 음악 10. 미술 11. 외국어(영어)	1. 국어 (1종) 2. 도덕 (1종) 3. 사회 (2종) 4. 국사 (1종) 5. 수학 (2종) 6. 과학 (2종) 7. 기술·가정 (2종) 8. 체육 (2종) 9. 음악 (2종) 10. 미술 (2종) 11. 영어 (2종)	1. 국어 (1종) 2. 도덕 (1종) 3. 사회 (2종) 4. 국사 (1종) 5. 수학 (2종) 6. 과학 (2종) 7. 기술·가정 (2종) 8. 체육 (2종) 9. 음악 (2종) 10. 미술 (2종) 11. 영어 (2종)
비고	전과목 1종 1~6학년 대상	1, 2학년 대상	1학년만 대상

※ 붙임자료. 2종 도서 판매순위 1, 2위 출판사

참 조	교과목별 분석 단원에 포함될 내용
(1) 분석틀에 의거한 전학년 인권관련내용 요약 표 (2) 인권관련내용이 포함된 단원의 예시와 분석 (3) 반인권적 내용 적시 및 문제사항 분석	

Ⅲ. 결론: 분석내용의 종합적 고찰

가. 시사점

나. 인권교육의 개선점 및 강화방안 제언

Ⅳ. 추진일정

일 자	추진 업무	비 고
2002. 5. 27.	■ 제1차 기획자문회의(기본계획 검토)	자문위원
6. 11.	■ 제2차 기획자문회의(분석틀 검토)	자문위원
6.	■ 책임집필자 확정	담당관실
6.	■ 집필지침 수립 및 검토	담당관실
7. 4.	■ 각급학교 집필진 총 25인 선정	담당 및 책임집필자
7. 24	■ 각급학교별 집필진 간담회(집필방향 논의 및 집필지침 숙지)	담당 및 집필자
9. 19.	■ 중간보고	책임집필자 일괄 제출
9. 27.	■ 전체 연구진 및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간담회(향후 수정정보완사항 검토)	담당관실 주관
10. 25.	■ 원고본 제출	책임집필자 일괄 제출
10. 말	■ 교과서수정보완내용 협의(교육부)	담당 및 교육부 담당자
11. 초	■ 원고본 심의	심의진
11. 22.	■ 최종 원고확정	
11. 25.	■ 인쇄의뢰	
12. 13.	■ 인쇄 완료	
12. 20.	■ 발간 및 배포 완료	

V. 집필시 유의사항

-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인권관련 내용 분석하고, 강화되어야 할 점 및 인권에 반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실시 상 활용도가 높은 자료가 되도록 집필한다.
- 인권교육 관련 교원연수 교재로 사용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편찬 목적에 맞도록 집필한다.
- 각급학교의 인권내용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학교교육과정정책과와 교과서 수정·보완을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편찬 목적에 맞도록 집필한다.
- 모든 학교급, 모든 교과목 분석시 분석 틀(국제인권규약 및 국내 헌법)이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면밀히 검토한다.
- 교과서 내용 분석시, 명시적으로 인권관련 어구가 표기되지 않은 단원(혹은 예문)이라도 맥락과 내용 상 인권관련 내용이 함의되어 있는 경우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분석한다.
- 반인권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함되어야 할 인권내용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 도표, 통계 등의 자료는 정확한 것, 그리고 가장 최신의 것을 사용한다.
- 불필요한 중복이나 내용의 비약이 없도록 하고,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인 문장이 되도록 집필한다.
- 제출된 원고는 보고서 발간 목적이나 체제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책임집필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한다.
- 기호표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한다.
(1. 가. (1) (가) 1) 가) ① ㉠)
-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 88-1호 ; '88. 1. 19) 및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 ; '88. 1. 19.)을 준수하고, 외래어 표기법 개정고시(문화부 고시 제92-31호 ; '92. 11. 27. 및 문화체육부 고

시 제1995-8호 ; '95. 3. 16.)에 따른다.

- 의미의 혼돈이 우려되거나 특수하게 필요한 경우 () 속에 한자나 로마자 등 원어를 표기한다.
- 원고는 학교급에 따른 교과별로 정리한 디스켓과 함께 제출한다.

VI. 집필자 명단

1. 초등학교

교과(영역)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총론(분석원리)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집필책임자
바른생활	이지혜	서울대방초	교사	
슬기로운 생활	"	"	"	
즐거운생활	"	"	"	
국어	문종국	서울광희초	교사	1, 6학년
	조태원	서울구의초	교사	2, 5학년
	엄형수	서울공항초	교사	3, 4학년
도덕	강희철	서울수암초	교사	3, 6학년
	곽혜송	석촌초등학교	교사	4, 5학년
사회	박용조	서울신정초	교사	4, 5학년
	정순원	KERIS	연구원	3, 6학년
수학	박기범	서울구산초	교사	
과학	박용신	서울본동초	교사	
실과	박기범	서울구산초	교사	
체육	문종국	서울광희초	교사	4, 5학년
	박용신	서울본동초	교사	3, 6학년
음악	정순원	KERIS	연구원	3, 6학년
	박용조	서울신정초	교사	4, 5학년
미술	조태원	서울구의초	교사	3, 6학년
	엄형수	서울공항초	교사	4, 5학년
외국어(영어)	강희철	서울수암초	교사	3, 6학년
	곽혜송	석촌초등학교	교사	4, 5학년
종합 및 제언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집필책임자

2. 중학교

교과(영역)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총론(분석원리)	이명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협력부장	집필책임자
국어	왕규용	경원중학교	교사	
도덕	황기현	대경중학교	교사	
사회	김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촉연구원	
국사	김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촉연구원	
수학	이회경	서울여고	교사	
과학	정승희	봉원중학교	교사	
기술·가정	이혜경	상원중학교	교사	
체육	조정권	광희중학교	교사	
음악	김택환	강남대 음대	교수	
미술	고승혜	청담중학교	교감	
영어	정선아	원목중학교	교사	
종합 및 제언	이명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협력부장	집필책임자

3. 고등학교

교과(영역)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총론(분석원리)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	집필책임자
국어	이은규	인천송도고등학교	교사	
도덕	조일수	서울대학교	강사	
사회	임상수	서울대학교	강사	
국사	조진호	안양과학대학	강사	
수학	이은규	인천송도고등학교	교사	
과학	조일수	서울대학교	강사	
기술·가정	최준화	난곡중학교	교사	
체육	임상수	서울대학교	강사	
음악	최준화	난곡중학교	교사	
미술	최준화	난곡중학교	교사	
영어	조진호	안양과학대학	강사	
종합 및 제언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	집필책임자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실행방안

강순원 (한신대 교수)

1. 왜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가혹한 참화 속에서 더 이상 인간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유린의 상황이 발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연합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선언이란 각국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없고 이의 불이행시 국제기구가 회원국을 징계할 국제법적 효력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국가가 합의하여 준수하기로 한 국제규약인 만큼 따라야할 도덕적 기준의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의 강제력을 부과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한 각종 협약들이 채택되고 회원국들간에 상호 비준되어 이것은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지니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

- 1) 세계인권선언
- 2) A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B규약(정치적, 시민적 권리)으로 구체화
- 3)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 4) 여성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 5) 비인간적 고문 및 잔인한 처우에 대한 반대 협약
- 6) 어린이 권리에 관한 협약
- 7) 난민 처우에 관한 협약

인권은 법적,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당위성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교육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영역이며 이를 위해 이미 1995-2004년을 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으로 선포하여 각국별로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할 때 인권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2. 인권교육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UNDHR에 따르면 ‘인권교육’이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간의 인성과 그 고유의 존엄성의 완전한 개발, 모든 국가, 민족, 원주민, 그리고 인종, 국가, 민족, 종교, 언어 집단간의 이해, 관용, 성별 평등, 그리고 우호의 증진, 자유로운 사회에 모든 인간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기,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과 같은 방향의 태도를 만들고, 지식과 기술을 알리는 것을 통해 보편적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 보급·확산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한 사회 성원의 가치와 태도,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에 기반한 적극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차원의 학습기법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지식, 가치, 교육기법 등이 인권교육에서 다루는 주 영역이다.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교와 직업적이고 전문적 훈련 등의 공식적 부문에서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제도, 가족, 그리고 매스 미디어 등 비공식 학습 등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중요한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권교육은 학습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추상적 표현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이라는 현실의 조건으로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모색에 학습자를 참가시키도록 만드는 구체적 행위라는 걸 명확히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의,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인권 침해 줄이고 동시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첫째, 급속한 근대화 과정을 거친 우리 나라는 유교 문화가 아직도 사회 문화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의 권리는 정실주의와 연고주의 등 혈연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제한당해 왔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개인의 보편적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둘째, 오랜 군사독재 정권의 지배에 따라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었다. 그 결과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기보다는 국가권력 자체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오랜 숙원인 정권교체에 의한 민주정치의 구현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국가의 실현은 절실한 민주화의 과제이다.

셋째, 정부 주도의 고도 경제 성장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 이해와 존중보다는 경쟁과 배제가 우선적이고 더 필요한 가치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획일적 가치보다는 창의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경쟁과 더불어 협력이 요구되는 현 지식기반사회의 경제체제하에서 대안적 보편적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유엔 주도로 전세계적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이러한 다양성과 개인의 보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적 건강성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넷째, 전사회적으로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개혁이 추진됨으로써 인권문화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 방식에 의한 인권 불신의 기조가 지배적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열린교육, 창의적 교육 및 참여학습이 주장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교사 주도의 지시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된 교육부가 여전히 학교교육 중심의, 교사동원 방식의, 지시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변함없이 일관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체계로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 존중에 입각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참여지향적 교육은 인권교육에 기반을 두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날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외국과 수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안에는 아직도 단일민족성을 강조하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자세가 강하게 남아있다.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자본, 노동, 정보, 문화 등을 공유하고 또 교류하려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의식을 하루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과, 우리와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다양성을 적극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권이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 국가권력에 의해 제한되고 억압당해온 상황이었으므로 인권교육이 지나치게 정치 저항적인 의미로 채색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사실 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저항과 창조 모두를 위해 절실하다.

인권교육은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 경쟁과 다른 사람에 대한 편협한 의식보다는 상호이해와 관용이 자기실현에 더 가치가 있다는 걸 모든 국민이 자각하여 정보와 지식, 자본이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21세기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학교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학교교육에서는,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기본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새청소년헌장 등의 정신에 기반하여 인권교육을 추진한다. 학교 안팎의 갖가지 인권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초중등 교육에서는 초중등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 자신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을 한층 더 충실하게 행한다. 동시에 대학교육에서도 지금까지의 교육 성과를 확인하고 인권 의식을 더욱 더 고양시키도록 배려한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① 초등중등교육에서 초중등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과별 학습에서뿐만 아니라 재량활동, 특별활동 및 방과후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학습에 있어서 각기 특성에 맞추어 각 학교교육 활동 전체에서 인권존중 의식을 고양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유아교육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감안하여 자연스럽게 인권 의식이 싹틀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등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인권교육 관련 실천적 조사연구와 각종자료의 작성 등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지도 내용·방법의 충실을 기한다. 정부는 각급 학교의 평가나 장학에 있어 인권교육의 실행 여부를 반영하도록 한다.

③ 인권교육 실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과서 개발자, 교육과정 평가자,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관련 정부 관료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인권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교원의 경우 인권교육의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으므로 교사교육에서부터 교원연수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

④ 각 대학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작하고 인권에 관한 교육·개발활동 노력들을 더한층 배려한다. 또한 대학생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도 인권교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국가실행안(National Action Plan)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에만 부처간의 개념상의 혼란을 막고 일관성있게 인권교육을 실행해 나갈 수 있다.

4. 인권교육을 어떻게?

기존의 주지주의적, 교과단원별 수업에 익숙한 교사나 연수기관 관계자들은 인

권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다. 해당교과에서만이 아니라 재량활동 그리고 방과후 활동 심지어 학급운영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 활동은 다양하게 소개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법 연마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에 기초하여,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내용 선정과 프로그래밍 및 실행을 거쳐 초기 목표에 기초한 평가라는 체계적 모형에 근거하여 인권교육 구체화 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관심있는 교사 위주의 인권교육 교사연수가 필요하다.

- 문제해결학습(problem solving learning)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역할 놀이(role play)
- 대화(dialogue)
- 협동(cooperation)
- 게임(game)
-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 적극적 듣기(active listening)
- 공동체 활동(collective and group activities)

그 외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기초 자료와 매뉴얼을 관련 기관들은 다양하게 제시해 주어 교사들이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지원센터를 가동해야 한다.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헌법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이론과 국제인권규약
 - 1. 국제인권교육의 가입과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요건
 - 2.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학설의 재검토
 - 3.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 III.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 1.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 2.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소원제도
- IV. 결론

I. 序 論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지도 벌써 12년이 지났다.¹⁾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규약은 세 가지 문서로 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그것들이다.²⁾ 생각컨대, 이들 규약들은 전(前) 국제연합사무총장 U. Thant가 적절히 표현한 바와 같이 우리 시대의 '인류를 위한 대헌장'(a Magna Carta for Man-kind)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국제연합인권이사회에 대한 국민의 개별적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가상호간의 인권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교육법·법교육, 법학박사)

1) 지난 1990년 3월 5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 국내법상 발효일은 정확히 동년 7월 10일이었으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 때로부터 다시 12년이 지난 셈이다.

2) 이 가운데 첫 번째 규약은 이를 보통 A규약, 두 번째 규약은 B규약이라고 부른다. 1948년 국제연합 제8차 총회에서 의결된 세계인권선언이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만 갖는 것에 대해, 이들 규약들은 그 규약들을 비준하는 국가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treaties)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문제제기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³⁾ 따라서 앞으로 이 선택의정서를 포함하여 동규약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서 우선 우리 나라가 동규약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동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문제에 관해서 주로 헌법해석학적 관점에서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주안점에 두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 제6조에 보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특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통설의 입장은 어떠하며 또 타당한가?

둘째, 위의 논의를 전제를 할 때 그렇다면 국제인권규약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 국내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헌법동위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법률 또는 명령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셋째, 역시 위의 논의를 전제로 하여 그렇다면 동규약의 효력은 현행헌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가? 특히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와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며, 헌법소원제도와 관련하여 동규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하에서 이들 문제를 차례대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II. 國際法의 國內法的 效力에 관한 理論과 國際人權規約

1. 국제인권규약의 가입과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요건

국제법 일반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요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 제6조 제1항상의 국제법 일반의 존재형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조항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국제법을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이 두 가지 법원에 대해 그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3) B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국제법과 개인의 관계서 그 동안 부인해왔던 개인의 국제법상 주체성을 국제적으로 공인한 의의를 가지는 국제법규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기의 인권이 국가의 공권력 등에 의해 침해당했으나 자국내에서의 가능한 구제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그 침해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동선택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직접 인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게 되었다. 동위원회는 개인의 청원이 있게 되면 이를 접수조사하고 접수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동규약에 가입한 그 개인의 본국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1993년 9월 현재 동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7개국이다. (이병조·이중철,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4, 621면).

즉, 동조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고 함)에 대해서는 헌법이 별도로 정부의 비준이나 그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설은 다만 어떤 국제법규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인지가 구체적인 쟁론에서 문제될 때에는 헌법해석론상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조약의 경우에는 헌법 제6조와 제60조가 명문으로 정부의 비준·체결·공포권과 일정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포된 조약이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흠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헌조약으로 보아 그 효력의 국내법상 혹은 국제법상 인정 여부를 논하게 된다. 이처럼 양자는 그 효력발생요건이 다르다.

그렇다면 국제인권규약의 경우는 어떠한가? 동규약도 일차적으로는 조약으로 성립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동규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비준서를 국제연합에 기탁함으로써 그 가입을 완료시킨 바 있다.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 후단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규약도 이제 국내법으로서 타당성(Geltigkeit)과 실효성(Wirksamkeit)을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동규약은 국내의 법단계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법 일반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동규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여하에 대해서는 특히 학설대립이 심하다.

2.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학설의 재검토

국제법의 국내법적 적용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것은 국제법은 어떻게 국내법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와 국제법은 국내법질서의 위계 중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 첫번째 문제는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변형(transformation)과 편입(incorporation)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택일을 요하는 문제이며, 두 번째 문제는 국제법이 헌법이나 법률 기타의 국내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하는 국내적 효력의 위치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일률적인 원칙이 없으며 실정국내법, 특히 각국의 헌법 또는 헌법관행에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규범논리적이 아니라 각국의 법질서의 현실을 통한 실증적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각국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보면 다

수국가는 국제법을 그 존재형식에 따라 국제관습법과 조약으로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헌행헌법 제6조 제1항을 문리상으로만 보면 국제법규와 조약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앞서서도 보았지만 국제법규나 조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설은 양자의 국내법적 지위와 효력에 관해서 이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국제법규와 준별하고 있으며 그 지위와 효력에 관해서 각각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⁴⁾

여기에서 이들 국제법규의 지위와 효력에 관한 학설을 각각 정리해 보면 우선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헌법동위적 혹은 헌법률적 효력설, 법률적 효력설, 국제법규의 규범적 성격에 따른 개별적 파악설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 조약에 대해서는 조약우위설과 헌법우위설이 대립하나 우리나라에서 조약우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헌법우위설 가운데 헌법률적 효력설과 법률적 효력설, 개별적 파악설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입장이 갈리는 와중에서도 일정한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법규는 그것이 조약이든 국제법규이든 통설은 이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헌법동위적 또는 헌법률적 효력설, 혹은 개별적 파악설을 주장하는 분은 소수이다. 통설은 이들 국제법규나 조약이 기존의 법률과 저촉할 경우에는 이를 국내법 상호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국회에서의 동의를 조약은 이를 모두 법률과 같은 지위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일률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국내법 수용방식이 법률과 같다고 하는 형식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집착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비록 조약체결권이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력인 까닭에 헌법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첫째, 조약은 그 기준에 따라서 보편조약, 일반조약, 특별조약 또는 입법조약, 계약조약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이 가운데 보편조약이나 일반조약은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이 이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하나로 보면서, 때로는 이것에 헌법률적 효력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셋째, 조약과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약과 저촉되는 법률을 조약합치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조약의 국내법적 의무와 국내에서의 효력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고자 하는 우리 헌법상 국제법존중주의의 관철이 필요하다

4) 金哲洙 前掲書, 212-216면; 權寧星, 前掲書, 202-204면 ; 許營, 「韓國憲法論」, 전영사, 1994, 172-179면 參照.

는 점에서, 적어도 보편조약 또는 일반조약 경우에는 C. Schmitt 이른바 절대적 헌법이나 헌법핵 또는 실질적 헌법보다는 하위이나 법률보다는 상위의 단계에서의 헌법률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조약의 체결국내에서의 지위와 효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 일본은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각각 인정하고 있으며 스페인, 이태리 등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소원제도 또는 국법소원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유럽 인권규약의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동규약을 근거로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통설과 같이 법률동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존재형식과 기본취지의 보편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며, 때로는 헌법률적 지위를 인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명령 혹은 규칙의 지위와 효력만 인정하여야 할 것도 있다고 본다.

3.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1) 국제인권규약의 존재형식과 그 국내법적 효력

국제인권규약의 존재형식은 그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때로는 조약으로, 때로는 국제법규로 새길 수 있는 두 가지 성격을 다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동규약의 조약규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동규약은 명백히 성문조약으로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그 제1항에서 정부의 비준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게 하면서, 이 동의권 행사는 헌법상 열거된 조약, 예컨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동규약의 국제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문제는 결국 동규약이 헌법 제6조상의 '국제법규'의 의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생각컨대,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하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의 일반적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라고 해석하면서 그 보편성에 역점을 두는 경우에는 동규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약'의 일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2002년 7월 현재 A규약 가입국이 125개국, B규약 가입국이 123개국에 이른다는 데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동규약의 존재형식 문제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요컨대 다음과 같이 새기는 것이 어떨까 한다. 즉, 동규약의 양면성을 그대로 다 인정하자고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

해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 제40주년을 맞아 국제인권규약에 관해 해석한 ‘국제인권법’(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국제 연합은 세계인권규약은 그것들을 비준하는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라고 밝히면서도, 한편 그 효력의 단계와 관련해서는 “동규약이 각국 헌법들의 타당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들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으로써 동규약의 국제법규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동규약의 존재형식은 형식적 절차의 측면에서는 헌법 제6조 제1항 상단의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규범적 효력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되는 이중성을 띤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동규약은 어디까지나 ‘헌법율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국제인권규약의 헌법율적 효력

국제인권규약의 존재형식에 관한 논의를 이와 같이 정리해볼 때 이제 그 국내법적 효력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본다. 즉, 동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율과 동위에 있으며, 이에 따라 동규약과 저촉되는 법률은 동규약의 효력 발생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⁵⁾ 헌법률은 헌법핵보다는 하위개념이나 법률보다는 상위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헌법전의 편제에 의할 경우 헌법핵에 해당되는 몇 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헌법률이 헌법핵에 저촉될 경우에는 이를 ‘위헌적 헌법률’(Verfassungswidrige Verfassungsgesetz)의 문제로서 그 유·무효를 논하게 된다.⁶⁾ 따라서 헌법률의 개념과 내용

5) 물론 判例는 여전히 이에 대해 消極的이다. 최근 한 國家保安法違反事件에 大法院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이사회에서 소론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法院公報」, 제962호(1994.2.15), 578면 이하에 게재된 1993.12.24, 대법원 제3부 선고, 93도 1771판결 참조

6) 여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동규약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 즉, 헌법율적 효력을 갖는다고 했을 때의 헌법률이란 도대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생각컨대, 이 문제는 헌법학계에서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C. Schmitt의 이론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 하겠다. ‘헌법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C. Schmitt의 헌법이론에 있어서의 규범체계에서 등장하는 말이다. 슈미트는 결단주의(Dezisionismus)의 입장에서 헌법규범은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상위의 규범으로서의 절대적 헌법과 하위의 규범으로서의 상대적 헌법 즉, 헌법률이 그것이다. 슈미트에 의하면 이 가운데 절대적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가 정치적 통일체(politische Einheit)의 종류와 형태에 관해서 내린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정치적 결단이다. 따라서 이것은 제법률의 법률이며, 규범의 규범(Norm der Norm)으로서 헌법개정의 한계가 되며, 통일적이고 불가분이며 모든 권력의 포괄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슈미트는 이 절대적 의미의 헌법이 헌법전에 구체적으로 정립된 것이 실정적 헌법(Positive Verfassung)이라고 한다. 그러나 절대적 의미의 헌법과 실정적 헌법이 같은 것은 아니며 후자는 전자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여기서 실정적 헌법은 통상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헌법전에서 헌법핵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슈미트는 그 예로써 Weimar헌법의 경우 민주주의, 공화정, 시민적 정치국가원리 등을 들고 있다. 이것에 반해서 상대적 의미의 헌법 즉, 헌법률은 슈미트에 의하면 헌법제정권력자의 절대적 의미의 헌법 혹은 그것의 실정적 헌법(헌법핵)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집행규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헌법률은 그 형식적 요건 즉, 성문

을 이와 같이 규정할 때, 국제인권규약을 국내법상 헌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함은 동규약상의 제인권예 관한 규정들은 특히 현행 헌법 제11조 이하에 열거된 기본권의 제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현행 헌법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것들로서 동규약에만 규정된 인권들은 헌법 제37조 제 1항상의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현행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흠결을 보충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하겠다.

Ⅲ. 國際人權規約의 憲法律的 效力과 憲法

1.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헌법률과 동위의 것으로 새길 경우 헌법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동규약의 제인권예 관한 규정들을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상의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발견원리 내지 그 구체적 형성원리에 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형성원리

현행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로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특히 기본권의 전국가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기본권의 실정권성을 전제로 하여 기본권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입장과 그 전국가성 혹은 자연권성을 전제로 하여 주의규정으로 보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통설은 이를 주의규정으로 보아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초실정법상의 자연권이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현행 헌법은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상 열거되지 않는 헌법 제2장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과 동일한 정도로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다른 인권들은 구체적

헌법전화와 개정곤란성 때문에 헌법현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동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며, 그 내용상 국가의사의 조직에 관한 것과 그 밖에 다른 내용에 관한 것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C. Schmitt 著, 金箕範 譯 「憲法理論」, 敎文社, 1975, 1-65면 參照).

으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본권의 구체적 형성의 원리에 관한 문제인데, 통설은 접근방법에 있어서 “헌법의 전체계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동조 제 1항의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구체화를 위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 기본권의 개별적 규정들의 종합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증거의 틀이 되는 것은 역시 헌법 제10조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권리가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측면에서 ‘인간에게 본질적인 권리’라는 판단이 서야 한다는 말이다. 기본권의 형성원리에 있어서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곧 현대에 있어서 Heinrich Rommen 등이 주장하는 바 신토마스주의(Neothomismus)의 자연법론에서의 핵심적인 사상 즉,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목적은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의 실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목적도 인간 본질(Natur der Menschen)의 실현에 있다는 인간존엄사상의 헌법적 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열거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문제는 헌법관습과 헌법판례, 조리, 학설 등에 의하여 하나 하나씩 확인해가는 도리밖에 없겠으나,⁷⁾ 오늘날 국내 학계에서 열거되고 있는 몇가지 예만 들면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한 권리, 평화적 생존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소비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불량상품 불매운동권, 일조권·휴식권·수면권, 스포츠의 권리, 저항권 등이 있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거니와 결국 이것들은 현행헌법상에는 열거되지 않았으나 우리들이 헌법현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거나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외에 소위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유네스코에서 전개하고 있는 제3세대인권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⁸⁾ 지금까지 접한 일련의 문

7)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구체적 형성방법으로는 새로운 인권의 구체적 권리화의 방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구병삭 교수는 ①새로운 인권을 기존의 헌법적 레벨에서 헌법해석론적으로 형성해 가는 경우와 기존 헌법의 레벨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②입법과정이나 ③판례법, ④행정실행 등에 의해서 형성해 가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구병삭, “새로운 인권과 그 보장,” 「考試研究」, 1981.2, 41-50면 參照

8) 제3세대인권에 대해서는 丘秉朔, 前掲論文, 41-50면; 李章熙, 第3世代人權에 대한 考察, 「法律新聞」, 1987.12.3, 13면; 李章熙, 人權으로서의 開發에 대한 權利, 國際法學會 論叢, 제63권(1988.6), 63-82; 上田勝美, “新しい人權の法學學的考察,” 「公法研究」 제40호 (1978), 108-111하; 여건정장, “人權體系理論의55 체계,” 法律詩社, 「憲法30年の理論と展望」, 1975, 7면 以下; 川眞田 嘉44 “人權의 發展의 權利,” 3333 편, 現代國際人權의課題, 三省堂, 1988, 81-111 면 ; Christian Tomuschat, “Das Recht auf Entwicklung”, Gem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5, 1982, pp. 85ff. ;Karel Vasak A Thirty Year Struggle, The UNESCO Couier 1977, Nov. pp. 29-32; Philip Alston, A Third Generation of solidarity Rights Law, in :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NILR), Vol. 19(1982), pp.310-311 참조.

헌들을 종합해보면 여기에서 새로운 인권이란 인권발달계보상으로 볼 때 제3세대 인권에 속하는 일련의 인권군들을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3세대 인권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동안의 인권계보를 살펴보아야 한다. 통상 지금까지 인권계보는 이를 두 가지로 분류해 왔는데 시민적 자유에 원천을 둔 인권계보와 사회주의적 평등사상에 바탕을 둔 인권계보가 그것이다.⁹⁾ 전자는 이를 제1세대인권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으로부터 시작하여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완성된 일련의 자유권적 기본권계보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시기적으로 이보다 훨씬 뒤에 형성이 됨으로써 제2세대인권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서 1917년의 소련의 사회주의혁명기와 1919년 Weimar헌법 제151조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된 일련의 사회권적 기본권계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계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이르러 종합되었으며 그 내용은 기존의 시민적 자유 본위의 인권체계에 사회주의적 생존권 체계가 추가된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새로운 인권이라 할 때에는 이러한 기존의 인권계보 이외의 제3세대인권들로서 이른바 연대권(Solidarity Rights)이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는 일련의 권리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컨대, ①개발에 대한 권리, ②평화에 대한 권리, ③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④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⑤인류공동유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⑥인도적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이러한 권리의 전형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서 인권계보를 이와 같이 정리할 때에 현행헌법 제2장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들은 몇 세대에 속하는 인권들인가 하는 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제1세대인권을 위주로 하되 제2세대인권들도 상당히 가미되어 있으며 혼치는 않지만 제3세대인권군에 속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헌법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우리가 지금 논의의 초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앞으로 그 구체적 형성의 일정한 방향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헌법상 열거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확인되고 존중받아야 할 새로운 기본권 내지 인권들로서는 위에서 유네스코가 제시한 제3세대인권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한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헌법상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란 이처럼 누구든지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모두 “헌법상 열거되지 않았으나 경시

9)상세한 것은 Louis Henkin, *The Rights of Man Today*, pp. 1-30 參照.

되지 아니할 기본권”이 되는 것이며 또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생각컨대,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주장하는 권리들이 아무리 새롭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절실한 기본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현실에서 「다수의 법적 확신과 지지」를 얻지 못한 다면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즉,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다수에 의한 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이르는 과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법사상이나 그것에 근거한 학설 또는 조리, 판례와 관습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의 유네스코에서 제3세대인권으로 주창한 연대권으로서의 모든 권리들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위에 소개한 연대권 가운데 우리 헌법에 이미 기본권으로 열거된 것들 즉,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동조 제3항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동법 제124조상의 소비자 보호운동권 등도 돌이켜 보며 오늘날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권리가 그동안 국내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확보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의 국제인권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원리들을 이와 같이 살펴볼 때 그렇다면 앞에서 논의한 국제인권규약의 헌법율적 효력은 여기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볼 것인가? 생각컨대, 동규약도 그 자체가 성문법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인권의 침해 현실에 비추어서 내용적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법상 적용되는 헌법율로서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어느 정도는 보충적으로 열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기본권의 다양한 발견과정을 얘기했는데 동규약에의 가입을 통해 동규약의 국내법상 헌법율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규약에 열거된 권리들은 그것들은 열거되고 또 그 권리들이 열거된 동규약에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이제 우리 국내법상 헌법율적 보장을 받게 된다고 볼 것이다. 생각컨대, 우리가 동규약에 헌법율적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동규약은 그 성질상 이 정도의 권리보장 효력은 지녀야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동규약 가운데 A 규약에 규정된 여러 가지 권리들 예컨대, 제1조의 자결권, 제7조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동일로동에 대한 동일보수와 유급휴가의 권리, 제9조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11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충분한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식량계획의무 제15조의 문화적, 과학적 혜택을 받을 권리 등과 B규약에 규정된 여러 가지 권리들 예컨대, 제10조의 피고인 등이 인간으로 취급받을 권리, 제11조의 책무로 인한 구금의 금지, 제20조의 전쟁의 선동이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심 고취의 금지, 제24조의 어린이의 권리, 제27조의 소수자의 권리, 제6조의 생명의 권리, 제9조의 비인격적 또는 모욕적대우의 금지, 제8조의 노예제도, 노역 및 강제노동의 금지, 제11조의 신용의 보호에 관한 권리, 제13조의 외국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등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중복되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은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과 함께 헌법율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규약을 근거로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2.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소원제도

(1) 현행 헌법상 헌법소원 제도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즉, 헌법률로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또한 한가지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동규약을 위에서 검토한대로 헌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경우 국민은 동규약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서도 우리 헌법상 새로 규정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우리 헌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B규약에는 명시되어 있는 권리 예컨대, 제6조의 생명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침해될 경우 이 B규약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침해의 구제를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동규약의 국내법상 헌법률적 효력과 관련하여 논의를 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 국내학계에서는 이에 관해서 언급한 사람이 많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는 외국의 경우를 비교헌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밖에 없다.

즉, 같은 헌법소원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헌법에 명문으로 조약 또는 국제법규의 헌법동위적 혹은 헌법률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경우를 참고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의 유럽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법리를 검토해보고 여기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2) 오스트리아에서 유럽 인권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헌법소원

오스트리아에서는 동규약의 국내법적 지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과 동등하므로 그 효력 또한 헌법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 헌법 제140조상의 제정법, 동139조상의 행정립법 혹은 제140조상의 조약의 타당성에 대해 결정할 때, 이러한 규범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그것이 유럽인권규약과 불합치한지의 여부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불합치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 무효가 된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1965년 10월의 판례에서 동규약의 제6조는 입법부를 위한 프로그램적 원칙일뿐 아니라 헌법적 중요성을 가지는 구속적 규범이라고 판시했다. 이때부터 동재판소는 유럽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판례법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유럽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해서도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3) 독일에서의 유럽인권규약의 효력과 헌법소원 가부

독일에서는 동규약을 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 보지만 그것을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유럽인권규약의 침해를 이유로 개인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가능한데 독일의 법체계에 위하면 동규약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상의 검토사항을 우리나라의 사정과 결부시켜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계상 특히 헌법의 경우 대부분 독일 법이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규약법리에 관한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독일의 이론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국제인권규약에의 가입 방식이 독일보다는 오스트리아 유사하다. 가입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독일처럼 변형이론에 입각하여 다시 별도의 입법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다. 둘째, 국제인권규약(유럽인권규약을 포함)의 국내법상 지위와 관련하여 비교헌법학적으로 관찰해보면 동규약에 대해 헌법적 지위와 효력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국가가 이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 가운데 상당수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한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스페인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111조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해서 그 자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모두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 제5호, 제113조 제3항)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헌법소원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상당 부분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위 나라들처럼 국제인권규약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한 입론이라 생각된다. 인권은 그 본질상 항상 인간의 존엄성 또는 그 본성에 입각하여 파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항상 그 보편성에 주목해야 하는 바 우리 헌법 제5조 국제법 존중의 원리도 이러한 정신의 반영에 다름아니라 하겠다.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헌법적 지위 부여와 그것에 기초한 헌법소원의 인정은 이러한 점에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

IV. 結 論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지 벌써 12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동규약이 국내법상 실제로 어느 정도나 규범력을 발휘하였으며 인권개선에 도움을 주었는지 의문스럽다.

논의를 마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본론에서의 논의가 어디까지나 헌법해석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국제법에서 중시되는 사례연구가 미진했다는 아쉬움이 다. 또한 국제인권규약의 헌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국내 헌법학계에서는 극히 소수의 몇 분을 제외하고는 별로 언급한 분이 없어서 매우 조심스럽다. 앞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반적으로 헌법학이나 국제법학이나 그 어느 영역에서도 실제로 인간의 자연법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 그 보편성을 전제로 한 국제적 보장과 그러한 보장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 진지하고도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인권에 대해서 이를 국내에서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헌법학에서 국제적 인권의 국내법적 보장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것이며, 국제법학에서도 개인의 국제법적 주체성과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헌법학이나 국제법학이나 이를 각자의 영역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학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권유형과 인권개념 및 내용에 관한 고찰: 분석기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박효중(서울대학교 교수)

I. 문제의 제기

권리(right)의 개념이나 인권(human right)의 개념은 한국사회나 유교적 전통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전통에서 출발한다. 실상 서구에서도 권리나 인권의 개념이 고전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아테네에서도 권리의 개념이나 인권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권개념을 접근하면서 주목해야 할 가장 고전적이며 공식적인 문서는 미국의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과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이다. 이 두 가지 문서는 권리와 인권의 개념을 정치적 조직과 정치사회의 핵심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17세기와 18세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세기 후반부에 이르러 인권개념에 대하여 새롭게 관심이 집중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에 의해서 주도된 민권운동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의 권리와 소수 인종의 권리 등도 중요한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성의 임신중절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에 관한 문제가 격렬한 사회적 쟁점이 되었으며, 이제는 죽을 수 있는 권리, 혹은 안락사(euthanasia)에 대한 권리도 논쟁의 대상이다. 또한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 혹은 동성애에 대한 권리, 동성애자들간의 결혼에 대한 권리도 논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human right) 못지 않게 동물권(animal rights)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T. Reagan and P. Singer 1976).

또 인권은 서구 국가들의 외교정책에서도 경시할 수 없는 규범적 기준이 되었다. 미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는 각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교정책을 넘어서서 국가들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인권개념은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었다. 이스라엘의 생존권과 팔레스타인의 귀향권의 충돌은 오랫동안 중동지역 불안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제3세계국가들

은 자결권(self-determination)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UN도 창립된 지 얼마 안 된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는데, UN인권선언에서는 미국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의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⁰⁾.

인권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높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관심사가 되었다. 또 국가인권위의 출범자체도 인권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인권개념은 명실공히 우리의 정치·사회생활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공통언어(lingua franca)’가 된 것이다.

이처럼 인권개념이 ‘보편적 규범성’과 ‘독립적 규범성’을 가진 강력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고 사회적·정치적·법적·철학적 담론에서 화두(話頭)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관한 개념에는 불확실성(indeterminacy)이 내재하고 있다. 인권의 유형도 다양할뿐더러, 또 다양한 인권 개념들 사이에 확고한 위계질서(hierarchical order)나 축차적 질서(lexical order)도 있는 것은 아니어서 충돌의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인권개념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문제를 일정 수준 견어내기 위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로써 교과서분석에서 인권에 관한 규제적 기준(regulative criteria)을 원용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권리에 관한 분류

1. 권리, 권한, 요구권, 의무, 책임

권리는 관련된 두 가지 범주의 당사자, 즉 ‘권리 보유자(right-holders)’와 ‘권리 준수자(right-observers)’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권리의 개념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권리 보유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또 하나는 ‘권리 준수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보유자의 관점에서 볼 때 권리란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허용(permission)”(R. Nozick 1974)이며 “행동하고 존재하고 즐기고 요구할 수

10) 물론 그 후에도 UN인권선언의 후속조치로 유럽인권규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1953)과 시민·정치권에 관한 UN국제규약(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과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UN국제규약(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 등이 나왔다.

있는 권한(entitlement)”(H. J. McCloskey 1965)이다. 권리 보유자는 권리에 의해서 함의되는 사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권리 준수자의 관점에서 권리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한 의무는 소극적으로, 즉 권리 보유자의 권리 행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권리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도와주는 적극적 의무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문제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권리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는 술을 마실 권리를 갖고 있으나, 술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자를 지정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2.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s)에서 함의되는 바와 같이 권리에 대한 의무가 소극적이라면 권리보유자가 문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적극적 권리개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권리에 대한 의무가 적극적이라면, 문제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즉 소극적 권리가 개인에게 일정한 허락을 해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권리라면, 적극적 권리는 그러한 인정과 권한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만드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간섭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이처럼 타인의 불간섭에 대한 권리(rights to noninterference)에 속하는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이외에도 생명,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간주하는 것들이다. 보다 포괄적으로 자유권, 생명권, 재산권 및 행복 추구권 등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 즉 생명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죽이는 행위를 금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권리들은 불간섭, 그 이상의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개인을 위해 적극적인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그러한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집주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의 결사의 자유와 같은 범주에 간섭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집주인은 아파트의 일부가 크게 파손되었다면 세입자를 위하여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도 모든 시민들이 최저 삶(social minimum)이나 기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만일 기본 건강권이 불간섭적 권리라고 한다면, 각 개인이 기본적 의료 서비스를 얻는데 아무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 건강권이 적극적 권리라면, 특정한 개인들이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즉 사회나 국가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적극적 권리의 경우, 누가 의무를 지니는가하는 문제가 관심사이다.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경우처럼, 특정한 재화를 공급하는데 특정한 개인이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우처럼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이나 보험을 내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비용배분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권리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표1. 권리의 분류와 사례>

분류	사례	권리 보유자에 대한 의무
소극적 권리	생명, 자유, 재산, 행복 추구	생명이나 자유 재산, 행복추구에 대한 간섭금지
적극적 권리	기본 생존, 기본 건강 서비스	의식주, 의료등 기본 필요제공

III. 인권의 강도

1. 절대적 권리

인권은 어느 정도로 중차대한가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권리라면, 물론 '절대적 권리(absolute right)'이다. '절대적'이라는 형용사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 절대적 권리는 다른 어떤 고려사항, 예를 들면, '효용'이나 '편의주의' 등의 가치에 의해 압도될 수 없는 그러한 권리다. 드워킨(R. Dworkin 1977)은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란 '트럼프 카드(trump card)'라고 규정한다

바 있다. 즉 다른 어떤 형태의 고려사항도 압도하는 것이 절대적 권리의 특성이다. 예를 들면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功利주의적 원리나 편의주의에 의하여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다. 즉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길을 가고 있는 무고한 행인을 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권이외에도 절대성을 띠고 있는 일련의 권리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강한 의미의 절대적 권리를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다른 어떤 고려사항은 물론, 다른 어떤 '권리'에 의해서도 압도될 수 없는 권리라고 하겠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 절대적 권리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절대적 권리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절대적 권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임신부가 유산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둘 다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택일 할 경우 배제되는 권리에 대하여 절대성을 띠는다고 단언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2. 직견적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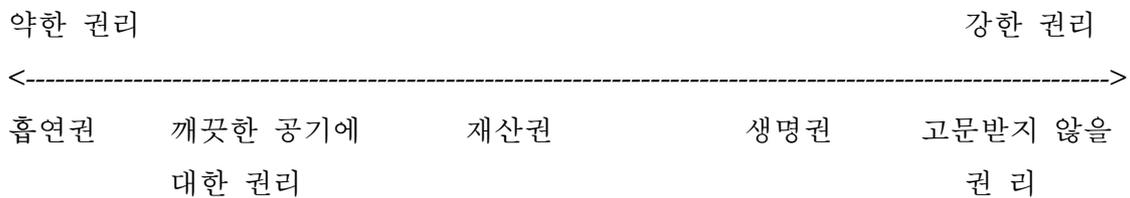
절대적 권리의 개념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모든 권리, 혹은 아마도 모든 권리가 '직견적 권리(prima facie right)'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직견성'을 의미하는 prima facie 라는 라틴어는 "일견해 보았을 때" 라는 의미이다. 특정한 권리가 직견적 권리라고 할 때 문제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고찰해보면 다른 고려사항이 그것을 압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직견적 권리는 문제의 권리가 실제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압도적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 개방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직견적 권리는 '추정적 권리(presumptive right)'라고도 지칭되는데, 특히 블래스토스(G. Vlastos)는 모든 권리를 직견적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권리의 강도

절대적 권리를 말하건 혹은 비절대적 권리를 말하건 상관없이, 권리의 무게를 강도(強度, degree)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이 가능하다. 특히 이 방식은 권리를 직견적 범주로 접근하는 방식과 양립할 수 있다. 어떤 권리를 '절대적 권리'라고 단언하기보다 일단 그 권리는 너무나 강력하여 다른 고려 사항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가 그런 권리에 속한다. 물론 다른 범주의 권리도 강력할 수 있겠으나,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처럼 그렇게 강력할 수 있을까하는 점은 의문이다. 생명에 대한 권리도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와 비교해보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때때로 국가는 특정한 중죄인을 적절한 절차에 의해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고문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하는 점에 있어 우리는 매우 회의적이다. 생명권에 비하여 재산권은 더 약한 권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은 재산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음을 로크는 갈파한 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다른 고려사항에 의하여 압도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재산권 규제-식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규제 등-는 이 점을 입증한다. 이에 비한다면 흡연권은 재산권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훨씬 미약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에 대한 권리가 더욱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밀(J. S. Mill)의 위해원리(harm principle)에 의하여 정당화가 가능하다. 상기의 사례들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강도의 서열이 가능하다.

<표2. 권리강도의 서열의 사례>



IV. 인권의 정당화

1. 정당화의 어려움

지난 50년간 인류는 인권문제가 야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비극적인 상황에 여러 번 직면했었다.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나치 독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국에서 민권운동(civil right movement)이 일어나기 전까지 감수해야 했던 흑인들의 상황은 현저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들 흑인들은 합법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차별화를 받았던 것이다. 또한 민주화되기 이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도 마

찬가지였다. 흑백분리정책(apartheid)과 제도 및 법은 인종차별의 대명사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상기의 세 가지 사례가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특정한 사회적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합법적’이며 ‘적법한’ 차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차별(discrimination)이나 차별적 대우가 관련 국가의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권에 관한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일련의 기본적 권리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실정법에 의하여 부인되고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주의자들은 문제의 차별과 억압,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부나 사회가 인정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실패했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심의 초점은 인권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권리는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거나 혹은 인정하는데 실패한 정부나 사회와는 ‘독립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다수의 인권주의자들은 정부나 사회, 혹은 실정법이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할 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본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기초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즉 이러한 권리들은 그 성격상 인간에게 속하는 권리라고 역설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권(natural rights)’이다. 그러나 물론 이 자연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의견이 통일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신이나 자연법(natural law)이라고 역설하는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혹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에서 그 근거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정한 권리들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명제자체에 관한 한, 쟁점으로 삼을 이유는 없으며,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명제라고 하겠다. 대체적으로 자연권을 정당화하는데 네 가지 상이한 입장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자명함에 호소하는 방식이며, 둘째로 신성을 그 토대로 삼기도 하고, 셋째로 자연법을 근거로 삼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human nature)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논리들에 관한 한, 일련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겠는데, 문제의 비판들이 비교적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각기 제한된 정당화(justification)만이 가능할 뿐이라고 판단된다. 본 논의에서는 인간본성에 관한 호소가 가장 방어할만한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① 자명함(self-evidence)에 호소하는 사례로 UN인권선언(1948)을 들 수 있고, 드 위킨이나 노직의 논리가 또한 인상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명함에 호소하는 방식은 인권에 관한 논쟁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약점이다. 인권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을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권리가 정당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자명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문제가 되는 자명함에 호소하면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자명함에 대한 호소는 직관주의(intuitionism)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권의 자명함을 선언하고도 노예제도가 인정되었고 지속적으로 소수인종과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신성(divine foundation)에 대한 호소가 역사적으로 인권에 대한 강력한 정당화의 논리였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계약론자들에게 있어 이점은 매우 현저하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적 토대에 대한 논리는 호소력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신의 개념이 인권을 근거 지우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가 아닌 다른 사회의 전통을 보면 신이 반드시 권리의 개념으로 인간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이슬람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혹은 유교사회를 보더라도 입증된다.

③ 자연법(jus naturale)에 대한 호소는 역사적으로 신적 토대와 깊이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로크(J. Locke)가 좋은 사례이다. 신적 토대에 관한 문제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신의 개념과 연관된 자연법 개념은 비신자에게는 호소력이 크지 않으며, 설령 신을 전제하지 않고 자연권을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자연권의 선을 인정하게 만드는 자연법(natural law)의 선함을 정당화하거나 입증할 길이 없다. 로크도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자연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만을 전개했을 뿐이다.

④ 인간본성(human nature)에 대한 호소는 현대에서 가장 유력한 호소로 간주할 수 있었는데, 인간의 고유한 속성들에 호소하여 인권을 정당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인간본성에 의한 정당화

인간본성에 의한 정당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특정한 속성이 권리를 부여하는 속성(rights-conferring properties)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권리를 부여하는 속성이라면 인간의 생활에 '본질적(essential)'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는 데 본질적인 속성으로 간주되면 그럴수록 권리부여의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모든 속성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인간은 침을 뱉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이 침을 뱉을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 침을 뱉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해서, 인간성

(humanity)이나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속성이 인간이 되는데 본질적인가하는 문제를 판별하는데 있어 문제의 속성을 제한할 때 인간성이 훼손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의 표현의 제한은 침벨기의 제한과는 달리 인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권리를 부여하는 속성이라면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적어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속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악설에 근거하여 인간이 본성상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 공격과 폭력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도덕적 악(moral bad)'을 권리의 범주로 주장한다면, 사실적 명제에서 규범적 명제로 전이하는 것으로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명제는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의 본성을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로 규정하는 경우, 그것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에서부터 정치적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 인간본성에 의한 정당화의 문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본성에 대한 호소가 인권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당화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주장과 반론은 거워스(A. Gewirth)와 매킨타이어(A. MacIntyre)의 논쟁에서 음미할 수 있다. 거워스는 《이성과 도덕(Reason and Morality)》에서 인권의 개념을 인간의 본성에 입각하여 정교하게 정당화하고 있다.

거워스의 논리는 인간이라는 단순한 사실(a simple fact)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특정 목적과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다. 그의 행위는 자유롭고 목적적이다. 인간의 복지는 목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조건들로 이루어진다. 일부의 조건들이 보다 물리적이라면 다른 조건들은 교육이나 자기공지와 같이 비교적 덜 물리적(less tangible)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복지는 인간 생존(human existence)에 필수적이다. 자유와 복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와 복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자유와 복지의 권리를 '갖는다(we have)'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와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we must have)'는 주장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거워스의 견해이다. 즉 거워스에 의하면 인간이 그러한 권리

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상의 오류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특정의 목적을 위해 특정의 행위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자유롭고 목적적 행위들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매킨타이어는 《덕이후(After Virtue)》에서 거워스의 논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인간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할 권리를 갖는다는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고 비판하는데, 단지 필요로부터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것이 매킨타이어의 입장이다. 물론 거워스는 매킨타이어의 비판과 관련하여 인간의 필요가 인간의 권리의 토대라는 전제를 내세우지 않고 다만 인간이 자유롭고 목적적인 존재라는 점만 수용함으로써 피해갈 수도 있다. 이 경우 권리는 자유롭고 목적적인 인간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유롭고 목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한편, 그러한 자유롭고 목적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한다면 모순된 논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와 '권리'의 관계는 모호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필요가 권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약물의 필요나 사치품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복지권과 관련해서 이 논리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필요(needs)는 당연히 필요 그 자체가 권리를 정당화한다고 하기보다 필요의 영역이 기본적인 수준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런지 모른다. 이와 같이 '모든 필요'가 아닌, 제한된 수준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만이 필요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어느 범위를 지칭하는 것이냐의 논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매킨타이어의 거워스 비판의 보다 중요한 측면은 특정한 사회적 배경을 전제하지 않는 권리의 개념이 '도덕적 허구(moral fiction)'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이다. 모든 권리주장이 일반화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할 때 그러한 권리들간의 조정과 규제를 위한 규칙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규칙은 특정 사회를 전제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VI. 인간은 어떠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이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유형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 점에 관한 한, 가장 커다란 쟁점은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1. 인간은 소극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극적 권리는 불간섭에 대한 권리이다. 주요 권리로는 자유권(right to liberty), 생명권(right to life), 재산권(right to property), 평등권(right to equality)등을 들 수 있다. 소극적 권리의 강점은 비교적 자명한 인권의 범주라는 점이다. 한 정치공동체가 이러한 유형의 권리를 억압할 경우 반인권 국가의 낙인이 찍힌다는 점에서 그 위력을 엿볼 수 있다.

2. 인간은 적극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적극적 권리에 관한 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소극적 권리 이외에 범주적으로 다른 적극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며, 또 하나는 한가지의 권리가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명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금지하는 권리를 지칭하고 있지만, 한편 최소한의 생존적 필요를 충족 받아야 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복지권(rights to well-being)은 대표적인 적극적 권리이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권 인정이 권리 준수자에게 상당한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적극적 권리자체를 부인하는 방안이며, 또 하나는 복지권을 요구권(claim right)으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이다.

전자의 입장에 관한 한, 크렌스톤(M. Cranston)의 통찰이 인상적이다. 크렌스톤은 보편적 인권들은 전통적으로 소극적 권리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UN인권선언의 경우처럼, 경제권의 포함은 '범주의 오류'를 범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서 그 모든 옳은 행위를 행위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ought implies can)'는 칸트의 명제에 상치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처럼 비현실적인 무리한 요구가 된다. 결국 복지권은 보편적 실현 속에 핵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理想)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는 적극적

권리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소극적 권리보호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소극적 권리론자들의 입장이다.

특히 소극적 권리 옹호자들은 복지권에서 불확실성(indeterminacy)이 엄존한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즉 복지권의 최소수준을 결정할 때 문제가 되는 가치의 다양성(plurality of values)과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으로 인해 한가지 범주나 유형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가하면 복지권을 주장하는 적극적 권리옹호론자들의 경우에도 복지권 역시 엄밀한 의미는 아닐지라도 정치적 권리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 보호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타인의 복지권을 위해 국가의 강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자신의 복지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하기도 어렵다. 특히 복지권이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의 범주를 넘어서서 '요구권(claim right)'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쉽게 정당화되지 않는다. 권리와 의무, 부담 등은 흔히 승인, 계약, 합의, 약속으로부터 발생되는데,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단지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고려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권은 '저절로(automatically)'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책임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 권리의 불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완전히 적극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물론 적극적 권리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이다. 하지만 모든 권리들은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고려할 때 이분법적 구분이 반드시 확고한 '범주적' 구분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철학적으로' 적극적 권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나 공공제도가 가난이나 질병, 혹은 기근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노력을 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3. 국제 인권법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논쟁

①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역사적 배경

인권 선언시 UN은 두 개의 권리로 구분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 범주의 권리가 상호의존적이라는 형식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경우 적절한 위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뿌리깊은 이견이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인정·선언한 UN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들 권리에 대한 취급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교하여 여전히 차별적이다. 즉 국가 대부분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헌법

적 권리(constitutional rights)'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더라도 그의 시행을 위한 입법적·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는 국가들은 매우 드문 형편이다(박찬운 1999).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역사적 연원은 다양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정치적으로 볼 때 19세기 영국의 페이비안주의자들(Fabian socialists)과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k: 사회보험제도 1880년대 창안)에 의해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시도되었고 그 뿌리는 미국의 뉴딜정책으로 이어졌다. 헌법적 권리로서 이들 권리가 처음으로 선을 보인 것은 1917년 멕시코 헌법과 소비에트 헌법에 이어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¹¹⁾.

②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구분 논쟁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간의 상호 연관과 의존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두 종류의 권리를 단일 조약안으로 만들 것인지 두개의 조약안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두 범주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 간에는 심대한 입장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두 개의 조약안을 주장한 사람들은 두 범주의 권리들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첫째,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의 강제나 혹은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고, 권리의 성격상 절대적 속성이 있는 반면,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그러한 속성이 없다.

둘째,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조약이 만들어지는) 즉시 적용이 가능한 반면,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점진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법적 권리인데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프로그램적 권리에 불과하다.

셋째,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위법적이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권리인데 반하여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긍정적인 행위를 해야하는 적극적인 권리이다.

결국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법적 권리이므로 이의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감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반면,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정기적인 보고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실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실

11) Henry J. Steiner et al.(1996)에 의하면, 미국의 헌법의 권리장전의 경우 교육받을 권리(초등교육), 직업의 권리(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유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합리적 근로환경의 조성(합리적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의무), 의식주에의 권리, 사회보장을 천명하고 있으나, 최소수준이다.

시 방법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실제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간에서는 <인권선언서>의 표현상 몇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ICCPR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경우, 명시적으로 ‘everyone has the right to...’ ‘no one shall be...’(개인은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단정적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CESCR에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하여 ‘states parties...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국가는 개인의 어떠한 권리를 인정한다) 라는 느슨한 형식으로 되어있다. 물론 주요 예외도 있다. 남녀평등이나 노동조합관련 권리 그리고 차별금지에 관한 문제에 관한 한, ‘states undertake to ensure the relevant rights’(국가는 관련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ICESCR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조항 Art.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는 “그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도 내에서(availability of resources) 인정된다”고 표현되어있다.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는 이러한 조항은 없다. 또한, ICCPR이 규정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즉각적 의무실현이라면, ICESCR이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해 말하는 국가의 의무는 점진적 실현(progress realization)으로 표현되어 있다(박찬운 1999, 59-60).

강조하거니와,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법적 권리 혹은 소추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들 권리는 오직 프로그램적 접근방식(이들 권리를 실현시키는 입법조치나 행정조치)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하는 소극적 인권론자들의 주장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점차 경제적·사회적 권리들은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 개념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적정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우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1990년 ICESCR Committee는 General Comment No.3를 발표하였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국가의 의무는 ‘행위의 의무(obligations of conducts)’와 ‘결과의 의무(obligations of result)’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만일 특정 국가가 자신의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식주나 최소한의 생활보장, 기본적인 의료혜택 혹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의 어려움을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노력을 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하지 않겠는가.

Ⅶ. 사회계약적 권리로서의 적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론자들이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주의자들의 입장이 직면하는 딜레마에 대한 해법이 존재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권리와 관련하여 고정된 범주나 자명한 범주로 보기보다는 사회계약적 범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바꾸어 표현한다면, ‘영원의 빛 아래(sub specie aeternitatis)’ 통용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옹호할 수는 없으나,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통용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간이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 권리를 가졌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권리의 실행은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다. 산모의 임신중절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 사례처럼, 인권들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 인권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문제는 체계화의 바탕에는 사회적 여건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권리가 특정사회를 전제하지 않고서 가능하지 않다는 매킨타이어의 지적은 매우 유용하다. 이봉철(2001) 역시 보편적 권리나 인권은 그 타당한 범위에 맞는 특정 사회관념을 전제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관념이 전제되는 이유는 우선 보편적 권리나 인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체, 즉 권리 보유자와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권리 준수자, 혹은 책무(의무) 담지자간의 인적·물적·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문제의 권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권리 내용과 실행 수단, 권리 소유 및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치기준에 대한 정치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동의가 필수 불가결한데, 이 모두는 도덕적이든, 법적·제도적이든 특정 규정이나 규칙을 중심으로 하여 권리주체와 의무주체를 묶어내는 사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복지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를 사회 계약적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힌만(L. M. Hinman, 1998)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복지권을 포함한 경제권·사회권 등을 사회계약적 권리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계약적 권리의 개념은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정의론》에서 주장하는 최소수혜자의 권리, 즉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쓴 계약자들이 맺을 수 있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게된다. 같은 맥락에서 힌만도 권리란 모든 인간들이 적극적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주장하기보다 특정사회와 특정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계약에의 참여’로부터 파생된 권리로 간주

한다. 그러한 일례로 현대 서구사회의 경우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 비문자 사회라면 그러한 자유가 서구사회만큼 중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강(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등도 역시 사회계약, 제도, 관행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사회가 같은 방식과 같은 정도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사회에서도 의료보험이 개보험으로 정착되기까지 일련의 점진적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던가. 또 과외교습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쟁점이 되는 것도 교육이 계층상승이나 신분상승에서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적극적 권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계약이라면 롤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상적 계약(hypothetical social contract)’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계약(real social contract)’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계약을 통하여 구축된 일련의 적극적 권리만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상적 계약이 아닌 실제적 계약을 통하여 비로소 일련의 사회권과 경제권이 헌법적 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III. 결어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인권개념을 둘러싼 불확실성 문제를 조명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누구라도 인간성의 특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한, ‘보편적 규범’과 ‘독립적 규범’으로서 인권의 개념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인권의 개념은 비교적 자명한 개념이다. 그것은 홉스나 로크가 자연법과 자연권과 관련하여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 것과 같은 유형의 자명성(自明性)이다.

인권은 보편성(universality)과 독립성(independence)을 가지고 있는 권리의 개념이다. 즉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향유해야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무게는 그것이 한 국가나 사회의 제도나 실정법과 독립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인권은 실정법과 독립적이다. 따라서 인권개념에 관한 한, “존재하는 것이 합리적(the real is rational)”이라는 헤겔의 준칙을 거부하게 된다. 그보다는 “합리적인 것이 존재해야한다(the rational is real)”는 또 다른 헤겔의 명제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독립적인 합리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세속화가 진전되어있고 문명충돌(clash of civilizations)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서 유래한 신법이나 자연법에서 그 근거를 찾기란 어렵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주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특정 속성, 즉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중립적인 속성이 인권을 부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원의 관점(sub specie aeternitatis)’보다 ‘인간성의 관점(sub specie humanitatis)’에서 인권의 정당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어느 정도로 어떤 범주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특히 소극적 권리론자와 적극적 권리론자들 사이에 전개된 쟁점사안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에 의한 불개입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 권리가 인권의 핵심적 범주라는 점에는 이의가 별로 없다. 문제는 적극적 권리의 범주에 속하는 복지권, 사회권, 문화권 등에 대해서도 보편적이고 독립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요구권(claim right)이나 권한(entitlement)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적극적 권리의 매력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의 범주를 비교적 완벽한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한편 적극적 권리의 아킬레스건은 권리 준수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위는 능력을 함의한다”는 칸트의 명제의 적실성을 새삼 흥미하게 된다. 한 사회가 복지권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복지권의 주장은 ‘초현실적(surrealistic)’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오늘날 반인권 국가라고 할 때 소극적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권이나 사회권, 문화권을 전적으로 경시하는 사회나 국가를 롤즈가 말하는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a well-ordered society)’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소수혜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하여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에 더욱 더 가깝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적어도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에 근접하려면 복지권의 실현을 보장할 수는 없어도 복지권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복지권(right to well-being)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것은 보편성과 독립성을 전제하는 자연권의 범주라기보다는 사회계약적 범주의 권리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가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구성원들 사이에 계약의 범주로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물론 사회계약의 범주로 규정되면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나 ‘헌법적 권리(constitutional right)’가 될 것이고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편적이고 독립적인 자연권의 개념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고려하면서 반(反)인권이나 비(非)인권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할 때 소극적 범주

의 권리 위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적극적 범주의 권리 위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느슨하게 판정하기를 제안한다.

※참고 문헌

박찬운 1999. 국제인권법. 서울: 한울.

이봉철 2001. 현대인권사상. 대우학술총서 서울: 민음사.

Cranston, M. 1973. *What are Human Rights*. London: The Bodly Head.

Dworkin, R. 1977. *Taking Rights Seriously*. London: Duckworth.

Gewirth, A. 1982. *Human Rights: Essays on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inman, L. M. 1998. *Ethics: A Pluralistic Approach to Moral Theory*. 2nd ed. London: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Lomasky, L. E. 1987. *Persons, Rights, and the Moral Commu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cIntyre. A. 1984. *After Virtue*, 2nd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McCloskey, H. J. 1965. 'Rights', *Philosophical Quarterly* 15(59), 115-27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Peffer, R. 1978. "A Defense of Rights to Well-Being",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8, No. 1.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Regan, T and Singer, P. 1976. *Animal Rights and Human Oblig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teiner. H. J. et al., 1996.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초·중등학교 교과서 인권관련 내용 분석모형

이명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협력부장)

여기서 초·중등학교 교과서 인권관련 내용 분석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이것이 유일한 모형이라는 사실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권분석 모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모형은 그 동안 인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 규약, 조약, 문서 등을 종합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구 가운데서 보편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합의된 권리를 추출하여 그것을 기본 권리로 삼았다.

기본적 권리로 선택한 것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1세대 인권이다. 이 권리는 서구 선진국에서 이미 상당부분 실현된 것이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절실하게 실현되어야 할 권리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2세대 권리이다. 이 권리도 매우 중요한 권리가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논의하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권리이다. 이제 선진국에서는 1세대 권리와 아울러 2세대 권리도 상당부분 충족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나 사회에서는 이 같은 권리의 상당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1, 2세대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된 후에는 3세대 권리로써 연대(solidarity)의 권리가 요구된다. 3세대 권리인 연대의 권리는 개별국가의 헌법이나 국제적 협약, 규약, 조약, 문서 등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실현하려고 애쓰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석의 틀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연대의 권리가 실천되어야 할 시기가 오면 당연히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권리이다.

현재의 분석모형에서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5개 권리를 그대로 분석틀에 적용시키지 않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하나의 영역으로 묶고 나머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묶었다. 이렇게 분류한 첫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영역이 1세대와 2세대 인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둘째 이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고 혼재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

려하였다. 똑같은 이유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하나의 영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더하여 각각의 권리에 상응하는 헌법의 조항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 부분은 이 자료의 부록에 자세히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분석틀의 권리분류의 미진하거나 애매한 부분은 부록에 제시된 이 분류를 참조하면 이해가 쉽고, 실제 분석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분석기준틀

국제조약	권리유형	조항	내용	헌법	내용
시 민 적 · 정 치 적 권 리	생명·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권 등				
	정치적 권리, 참정권				
	청구권(적 권리)				
	경제권				
사 회 적 · 경 제 적 · 문 화 적 권 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노동권(근로조건, 노동3권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교육권				
	문화권				

2) 분석보고서 목차(안)

(1) 교육과정 인권내용 분석의 원리(총론팀)

- 가) 인권관련내용 분석의 필요성
- 나) 초중등 인권교육의 목적 및 방향
- 다) 각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한 서술(특성, 통합성, 특수성)
- 라) 분석보고서의 목표 및 방향(분석틀, 분석대상 교과목 선정이유, 활용 방안 등 포함)

(2) 각 교과별 인권내용 분석(각 학교급별 교과별 분석자)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명시한 10개 공통교과가 제시되어있다. 도덕, 국어, 사회(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가 그것이다. 이들 10개 교과의 초·중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분석모형에 맞추어 분석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교과서 분석시 몇가지 유의점이 있다. 첫째, 초등학교는 현재 교과전담교사가 없는 반면에 중·고등학교는 교과전담 교사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서가 국정이기 때문에 1 가지 종류의 교과서가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국어, 도덕, 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가 검정 교과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석시 과목별로 최소한 검정 교과서 1 - 2종을 선택해서 분석해야 한다. 셋째,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1학년까지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한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서 2, 3학년의 선택과정은 일단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중학교의 경우 아직 3학년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개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부득이 제외하였다. 이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다.

가) 과목의 목적, 특성, 내용에 대한 요약

- 목적: 10개 교과별 과목의 목적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특성 및 내용: 교과별 특성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서술

나) 학년별 내용 분석(초: 1 - 6, 중: 1, 2년, 고: 1)

- ① 분석모형에서 제시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따라

각각의 교과서 인권내용의 오류를 찾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함(반인권 내용, 그 내용이 오류인 이유 제시 등)

② 인권서술의 미진, 오류지적 및 분석

반인권적 내용은 아니지만 역사적 발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권의 내용으로 적적하지 않게 서술된 경우(비인권적)를 찾아서 지적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함(비인권적 서술, 미진한 서술, 그 내용이 잘못된 이유제시 등)

• 중학교 예시)

- 1) 인권개념 분석모형에 따른 유형별 분류(교과별 교육과정 중심)
- 2) 개념분류의 근거(공통)
- 3) 교과서인권내용의 오류지적 및 분석
- 4) 교과서인권내용 서술의 미진, 오류지적 및 분석

다) 분석 결과에 대한 대안

①, ②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지를 인권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라) 분석 결과에 따른 인권교육의 문제점

나)와 다)의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교육 상의 오류와 연계하여 현재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교과별로 제시함

마) 교과별 시사점

나), 다), 라)의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앞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3) 분석내용의 종합적 고찰(총괄팀)

가) 시사점

나) 인권교육의 개선점 및 강화방안 제언

초등학교 국어과 인권내용분석

강희철(서울수암초등학교 교사)

1. 단원

: 5학년 1학기 읽기 2 경험속으로-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 교과서 내용

- ① 반장에게 항의하였으나 주변 분위기가 반장에게 복종하는 분위기로서 오히려 비웃음을 산다는 내용
- ② 전학 온 아동이 반장아동인 엄석대에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정받는다는 내용

3. 관련 인권

- ① 국제인권규약 A규약, B규약 전문
- ②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③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비열거권리보장조항-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4. 지도내용

국제인권규약에서는 A규약, B규약 전문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으로써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며 개인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인격의 존중은 민주적 기본 질서조항과 함께 민주정의 기초형성기능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은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 외에 헌법비열거권리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의미한다. 헌법비열거권리조항으로서는 자신의 문제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각급학교에서 일고 있는 학교내 일부 학생들의 폭력,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찍기 등에서 볼 수 있는 인권침해내용이 주로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권리로서 민주사회형성에 필수적인 권리로서 학생들에게 이를 지도함으로써 민주사회질서교육 및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학생들의 인권신장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음악과(3학년) 인권내용 분석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1. 분석의 방향

음악교과의 인권내용 분석을 위해 음악과 교육과정과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에 대한 분석의 기준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과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어린이·청소년권리에 관한 협약 등으로 한다.

음악교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교과서는 제재곡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 특히 교과서는 제재곡의 내용, 사진, 삽화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2. 분석의 틀

분석의 기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시민적 권리	서로서로 도우며(교과서 57쪽)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	음악의 성격(교육과정)			

3. 분석의 내용

1)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교과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영역에서는 인권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부분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음악과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특히 음악과는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악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로 우리 나라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그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음악은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음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음악활동을 통해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고자 하는 교과이다. 이와 같은 음악교과의 성격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권,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국제인권규약 중 A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세계인권선언 제27조제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의 표현에 대한 자유권, 제31조제1항 “당사국은 ...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과 제2항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호,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한다”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을 살펴보면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음악문화 창달, 발전, 그리고 계승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원리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문화의 ...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과 헌법 제9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2) 교과서 분석

단원명 (제재곡명)	인권 내용 분석		교과서 쪽수
	분석의 기준	교과서 내용	
서로서로 도우며	시민적 권리	기쁜일 슬픈일 모두 내일처럼 여기고 잘못이 있어도 모두 용서하고 타일러 서로서로 도와가며 한집처럼 지내자 서로서로 도와가며 형제처럼 지내자	57쪽

음악교과의 경우 직접적으로 인권을 명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노래가 교과서에 선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내용상 인권 관련 내용이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제재곡 “서로서로 도우며”의 가사를 살펴보면 위 표와 같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애, 형제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이는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 교과목별 인권관련 내용의 강화방안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인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맥락상 혹은 내용상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전래동요나 민요 등과 같은 전통음악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향후 음악과에서 인권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기 방안으로 인권 관련 곡을 교과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

- 인권관련 주제 선정후 곡에 맞게 가사 바꾸기

예1) “서로서로 도와가며”노래를 (평등)을 주제로 가사를 바꿔보고 자기가 만든 노래를 친구들과 함께 불러 봅시다.[학습지도안]

○○○와□□□ 사이에 다른 점도 많지만
손가락 발가락 모-두 열 개로 똑같죠.

예2) 이웃집에 대해 조사해 보자.[학습지]

이웃집	서로 인사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돕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습니다.	함께 여행을 갑니다.
희찬이네집	○	×	○	×
짱구네집	×	×	×	×

중학교 도덕과 인권내용분석

황 기 현(대경중학교 교사)

1. 과목의 목적, 특성, 내용에 대한 요약

현행 7차 교육과정은 도덕과의 목적을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을 익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 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르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세분화해서 영역별로 별도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는데, 먼저,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와 삶의 다양성에 따른 가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 인간 존중의 삶의 자세 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에서는 다양한 도덕 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이러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문제 사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과 바른 생활 및 실천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전통 도덕과 시민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민주 사회의 도덕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합리적이고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는 태도와 실천 의지를 지니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민족 생활에서는 국토와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민족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자세와,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과제를 파악하여 통일의 과정 및 통일 이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한국인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각각 목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도덕과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보편적이며 이상적인 가치들과,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 규범과 가치들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행동 습관을 기르는 동시에,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교과” 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는 통일 대비 교육 등을 핵심 영역으로 다루면서, 도덕규범과 가치문제를 탐구하는 규범 과학적 관점과 사회 질서 유지 및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한 국민 의식 형성 문제

를 탐구하는 사회 과학적 관점을 양대 관점으로 해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다시 계열적 특성으로 분류해보면, 초등학교 단계인 3~6학년에서는 저학년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 교육을 발전, 심화시켜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초보적인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며, 도덕적 실천 성향과 행동 습관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둔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단계인 7~10학년에서는 나선형 교육 과정 원리에 따라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신념화시키며, 도덕 원리에 입각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육성하여 자율적 도덕성을 습득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다음으로, 범위적 특성으로 분류해보면, 초등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의 비중이 높고, 고학년에서는 사회생활과 국가·민족 생활의 비중이 커진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 생활 영역상 내용 비중의 차이는 없으나, 대신 내용의 심화를 위해 7, 9학년에서는 개인 생활과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8, 10학년에서는 사회생활,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초·중·고등학교 '도덕'은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 과목인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와 연계되는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교과 목적과 특성을 지닌 중학교 7차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 구분	7학년		8학년		9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목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개념 파악과 도덕적 생활에 필요한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생활화				도덕적 문제의 다양한 갈등 사태 해결 경험을 통한 가치 판단 및 선택 능력의 신장	
성격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 규범과 생활예절을 익히며, 도덕적 판단능력을 길러, 한국인으로서,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					
영역	개인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 생활	개인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내용	·삶의 의미와 도덕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 ·인간다운 삶의 자세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행복한 가정 생활 ·친족간의 예절 ·이웃간의 예절 ·학교생활 예절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 ·현대 사회와 시민 윤리 ·민주적 생활 태도 ·생활 속의 경제 윤리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남북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삶의 설계와 가치 추구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 ·도덕 문제와 도덕 판단	·진학과 진로 탐색 ·가정·친족·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 ·학교 생활과 도덕 문제

2. 학년별 내용 분석

가.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분석

권리 유형		학년별 관련 개념의 분류		
국제조약	기본권체계분류	7학년	8학년	9학년
시민적·정치적 권리	생명·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생명존중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 ·자율 ·관용, 아량	·천부적 인권 ·인간존중 정신 ·생명존중 ·기본적인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양심 ·양심선언		
	사생활의 자유	·정보유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권 등		·시민단체 ·엔너스티, 그린피스, 환경단체	
	정치적 권리, 참정권		·자발적 참여 ·투표	
	청구권(적 권리)			
	경제권		·합리적 소비	·직업(선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양성평등	·법앞에서의 평등 ·평등의 원칙 ·기회의 균등 ·남녀고용평등법		

권리 유형		학년별 관련 개념의 분류		
국제조약	기본권체계분류	7학년	8학년	9학년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노동권(근로조건, 노동 3권 등)		·일하는즐거움 ·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장애	·사회보장제도 ·기본적 생활을 보장 ·분배	
	인간다운 생활권	·건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삶의 질의 조건	
	교육권	·교육의 권리		
	문화권		·문화	

나. 인권 개념 분류의 근거

인권은 우리의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관련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그 범주나 계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분류 방식은 다양해 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국제 협약의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다.

1) 시민적·정치적 권리 : 생명, 자유, 안전,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 노예제도의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함부로 체포·감금당하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소신과 발표의 자유, 평화적 집회를 가질 권리, 거주이전의 권리,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B규약)에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권리 내용과 관련된 개념들

먼저 중학교 도덕과 7차 교육과정의 내용들(2003학년도부터 시작되는 9학년의 내용은 제외) 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유개념(類概念)들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국제협약의 기준에 근거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로 대별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몇몇 눈에 띄는 인권 관련 개념들이라 하더라도 실제의 경우에 그 개념이 인권과 거리감 있게 기술되어진 경우가 있거나(양심, 행복……), 반대로 개념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교과서의 내용은 인권 관련 기술들로 이루어져 어떤 인권 개념을 함의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등과 관계된 교과 내용의 특성상 '인간 존중'이나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기본적인 권리 존중' 등과 같이 양대 권리 모두와 관련 있는 포괄적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나 '사회

적·경제적·문화적 권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권 전체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국제 협약의 분류 준거에 비추어 전통적인 구분처럼 인권을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의 두 영역으로만 대별해야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와 관계된 유개념들(인간 존중, 생명존중, 기본적 권리 존중,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 관용, 아량 등)은 모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계된 종(從)개념들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용'이나 '아량'은 보편적 인권의 원리로서의 적극적 의미보다는 그 하위 개념이나 윤리적인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타인보다 더 우월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를 베푼다는 동정이나 시혜(施惠)의 의미가 아니라, 같은 처지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상정해 보고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든,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자신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이해와 역지사지(易之思之)의 정신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나아가 기본권 개념에 포함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자유권에 속한 권리 유형들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도덕교과 속의 개념들(양심, 양심선언, 정보윤리, 시민단체, 그린피스, 등)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고 그 의미 또한 '자유'가 지닌 적극적인 권리의 의미보다는 '방종의 폐해'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보조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적극적인 권리 개념으로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사생활 보호권, 결사·집회의 자유 등과 관련지어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 볼 여지는 충분하므로 개념 선정이나 분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평등권과 관련된 개념들(양성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평등의 원칙, 기회의 균등 등) 역시 준법의 전제가 되는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법의 평등한 보호'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 예를 들면, '인간존중', '경제정의', '이성에 대한 이해' 관련 단원 등에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않을 적극적 권리의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정권이나 청구권, 경제권 등과 관련해서도 교과 내용 속에서는 단순히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사회봉사에서의 '참여'나 낭비와 사치의 폐해를 줄이는 의미에서의 '소비' 개념 등(자발적 참여, 투표, 합리적 소비 등)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정치적 참여의 권리나 소비자의 권리, 피해보상 청구권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권리 개념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표' 개념 역시 정치적 활동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까지 포함시켜 넓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다.

2)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 일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을 받으며 알맞은 생활수준을 지탱할 권리, 굶주림에서 해방될 자유, 깨끗한 환경과 건강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 가입할 권리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A규약)에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권리 내용과 관련된 개념들

헌법 이념의 실현을 위한 목적과 수단인 관계를 설정해 본다면, 인간의 기본권은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위에 열거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들은 모두 자유권을 보완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권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유권이 주로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는 개인의 생명·재산·자유와 같은 권리라면,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과 분배정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며 국가가 그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권리인 것이다. 요컨대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소득과 노동, 휴식,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IMF 이후 우리사회에서 한창 맹위를 떨쳤던 정리해고와 실업, 그리고 최근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은 개인의 능력 탓이 아니라 '일할 권리의 박탈' 또는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상실 내지는 분배정의의 퇴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를 평등사회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지금 도덕 교과서에 등장하는 근로, 건강, 교육, 환경, 문화, 사회보장, 장애, 여성, 빈곤, 분배, 사회적 약자 등의 개념들은 모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유익한 개념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인권 내용의 오류 지적 및 분석- 해당 사항 없음

라. 인권 서술의 미진, 오류지적 및 분석

1)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2학년 도덕 62쪽 그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조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2 | 사회 생활과 도덕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조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학년 도덕 62쪽은 시민윤리의 기본 정신 중 ‘규범을 지키는 정신’에 대한 설명의 일부분으로서 특히 네 번째인 ‘사회적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정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고려할 때 그 이익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공공선을 위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정부에서 ‘그린벨트 조정안’을 발표하자,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 1200여 명은 ‘전면 해제’를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하고...〈중략〉...한편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반발하여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환경 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공선(公共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善)

여기서 우리는, 사회 전체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 사이의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각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각 개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위의 교과서 기술 내용의 주제는 ‘사회적 공공선을 위한 정신’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이 충돌하더라도 갈등을 조절하고 대립이 해소될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피해가 있더라도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만 한다면 다수에게 이익인 쪽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여기서 이익이나 공익을 권리의 개념으로,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소수와 다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개인이나 소수의 권리는 국가나 다수의

권리를 위해 양보되어도 좋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공리주의자들이 '옳은 행동'과 '효율적인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효율성의 의미만을 극대화하려다 실패한 도덕이론에 빠져들었던 어리석음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기술 내용에서 무엇보다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 62쪽의 자료 그림과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자료 그림은 위의 교과서 기술 내용 말미에 가로 15cm, 세로 9cm로 비교적 크게 제시되어있는데 본문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집회나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정당한 권리주장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로 오해하게끔 만들 소지가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조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자료 설명에 의해 더욱 명확해지는데 앞서 제시된 '그린벨트 조정안에 관한 이야기'와는 사뭇 연관 없는 장면이고, 또한 전체 노동자 중, 일용직 및 계약직 노동자의 비율이 51.6%(2001년 말 통계청 자료)로 계속 높아져, 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과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당한 집회와 권리주장이 한낱 '개인의 이익'으로 폄하될 수 있고, 공공선(公共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습으로 비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취진다면 사진에서 현수막을 들고 전면을 향해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사진을 게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인격권적 의미의 초상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인간의 궁극적 만족 목표로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정신적 요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문화와 여가, 사회 참여 등이다.(2학년 도덕 116쪽)

이 단원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에서 '삶의 질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삶의 질'이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전체 내지는 그에 속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물리적 요건으로 주택공급이나 교육, 의료서비스, 대중교통의 편리성, 건강과 안전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질적으로 더 높은 삶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삶의 질의 정신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와 여가, 사회참여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엔 객관적 요소인 물질적 만족감과 주관적 요소인 정신적 만족감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 발전과 복지 정책으로 객관적 요소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므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얼마나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찾느냐하는 주관적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인권의 수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물질적 조건이든 정신적 조건이든 돈이 있으면 높은 수준

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결식아동이 적지 않으며, 문화생활은 고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재산을 모아도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기 힘든 세상에서 주거권(住居權)이란 개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어 보인다. 교육 또한 학력중시의 사회에서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자동차 위주의 교통환경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권리와 환경권이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돈이 있으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스포츠 활동은 물론 기왕에 주어진 건강권을 지키기에도 힘겨워 보인다.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막연한 이상론으로 주어진 조건이야 어떻든 그 속에서 만족과 즐거움만 찾으려 한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며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3. 분석 결과에 대한 대안(예시)

가. 인권 내용의 오류지적 및 분석에 대한 대안

나. 인권 서술의 미진, 오류에 대한 분석 대안

1) 먼저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서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하는 정신'이 '사회의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하는 정신'이라는 표현에서 공공선(公共善)*을 교과서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善)'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 마치 개인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는데, 이를 수정하는 의미에서 '사회의 공공선을 위하는 정신'이라는 표현보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조절하여 조화를 이루는 정신' 혹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조절하여 공공선(公共善)을 이루려는 정신'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없이 국가나 사회, 나아가 온 인류도 있을 수 없고 개인의 이익이 모여져 공익이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삭제하고 그냥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善)'이라는 의미 해석만을 달아놓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또한 교과서 본문의 내용에 부합되는 삽화나 사진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권리 주장들 속에서 갈등과 대립을 조절하고,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쉽지 않으며, 그만큼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사진을 선택하고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우선 본문의 내용이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를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 역시 똑 같

은 비중으로 환경권 지키기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조정안이 왜 양측 모두에게서 설득력이 없으며 무엇이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모두 위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선(公共善)을 이루는 길인가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게 하는 본문 구성과 자료 사진 및 설명 배치가 훨씬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p>◀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1998년 4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재조정 방침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p>	
<p>▶ 1998년 11월 28일 남양주시 등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촉구시위를 벌였다.</p>		

(http://www.chosun.com/poll/news1998/korea06.html 디지털 조선)

2) 교과서 115~118쪽의 '삶의 질의 조건'과 관련된 본문 내용은 우선 '삶의 질'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기 전에 이를 먼저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세계인권선언의 규약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 모든 인간에게 권리로서 부여된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들, 이를테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3조),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24조),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25조),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지적 창조물을 보호받을 권리(27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이들 권리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도와 이유, 대책, 권리 찾기 노력 등에 대해 차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로 내용 구성을 이루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의 조건'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어 주관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일정 기준이나 설문조사, 통계 등에 의존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자신이나 자기 주변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비교, 분석해보고, 권리 신장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유도하는 구성 형식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4. 분석 결과에 대한 인권교육의 문제점

현행 인권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체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교과별로 산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교과서의 내용 구성 또한 간접적인 언급 정

도에 그치고 있어 교수-학습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자연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도덕과의 경우 생명존중이나 인간존중, 관용, 자발적 참여, 건강, 문화, 교육, 사회보장, 빈곤, 분배, 정의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대개의 경우 적극적인 권리 표현보다는 의무나 책임, 준법, 자율성 등과 관련된 소극적인 가치 덕목들의 의미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타인에 대한 배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덕목들의 의미 이상으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나의 권리 주장 못지않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노력 또한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인권 교육이라고 본다면 나름대로 접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권리 또한 지켜지기 힘들다는 명백한 현실에 직면한다면 나만 법을 잘 지키고, 나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접근 방법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도덕과의 경우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의식교육 등과 관련된 주제들 속에 녹아있는 인권 관련 개념이나 소주제들을 찾아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교과에 비해 입시 부담이나 학습 시간 부족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통합교과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 또한 많다고 하겠다. 즉, 교사의 의지 여하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체계화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겠다.

중학교 음악과 인권내용 분석

김택환 (강남대음악과 겸임교수)

1. 음악과의 목적, 특성, 내용에 대한 요약

가. 음악과의 목적

음악과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음악의 의미는 그 음악이 속해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학생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음악과의 특성

중학교 음악과 지도 특성은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진 기초적인 음악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학생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습득하고, 습득한 음악 개념은 다양한 음악 활동에 활용되므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두 영역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에 대한 애호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중학교에서는 음악에 대한 흥미와 태도가 바람직한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생활 속에서 음악이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이해하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한다.

다. 음악과의 내용

음악과의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데 있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 ① 음악학습에서 꼭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였다.
- ② 창의성과 음악성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 ③ 학교에서만 뿐만 아니라 생활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음악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 ④ 내용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제시하였다. 특히 국악학습에서 꼭 가르치고 학년 수준에 적절한 필수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였다.
- ⑤ 음악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⑥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하였다.
- ⑦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교육 편제는 중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묶어서 제시하였다.

2. 학년별 내용분석

가. 인권개념 분석 모형에 따른 유형별 분류(중학교2학년 (주)천재교육, 백병동 외 4인)

국제조약	권리유형	조항	내용	헌법	내용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생명,신체의자유와 안전의권리		춘향가		내가 탄 마차는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				내가 탄 마차는
	사생활의 자유		춘희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권 등		봉숭아		
	정치적권리,참정권				
	청구권(적 권리)				
	경제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춘희		
	노동권(근로조건, 노동3권 등)		경복궁 타령 정선 아리랑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꽃분네야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봄노래, 해녀소리 산타루치아, 별		
	교육권				
문화권					

나. 인권 개념 분류의 근거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사생활 영역의 자유, 비밀의 자유, 통신의 비밀, 거주 이전의 자유, 인신 자유권(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등이 시민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는 권리인 동시에 책임을 안고 있고 또 평등권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다. 자신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것이다. 정치적 권리에는 정치적 자유 및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 투표권), 청원권, 청구권,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분의 불평등을 받았다든지, 노예생활을 통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에 대한 분류를 하였다.

2)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환경권 쾌적한 주거 생활권, 건강권 또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학문과 예술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문화 향유권 등을 통하여 구분 했다. 경북궁 타령이나 정선 아리랑은 노동을 통하여 육체의 피곤함을 표현했고 봄노래, 별 등은 자연의 환경에 대한 표현을 추구 했다.

다. 인권 내용의 오류지적 분석.

해당사항 없음

라. 인권서술의 미진, 오류지적, 분석

사례 1) 차례 (중학교2학년 음악교과서 백병동 외 4인 (주)천재교육 이후 2-차례로 표기)

교과서에 실린 우리나라 가곡은 생활의 노래 “아름다운 세상” 포함 총 5곡이다. 즉 흥난파 “봉숭아”, 박용진 “자연에게”, 박판길 “산노을”, 이수인 “별” 이다. 그런데 작곡가 모두가 남성 작곡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평등권 차원에서 본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교과서에 수록 되어진 곡으로 미루어 볼 때 훌륭한 곡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작곡가의 곡들도 훌륭한 곡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므로 교과서 제작에 있어 남녀의 작곡가 비율도 참고하여 제작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앞선다.

사례 2) 작곡가에 대한 소개의 필요성 (2-26, 2-31, 2-48, 2-62, 2-72. 비교 2-7, 2-39, 2-61)

우리는 흔히 유명한 작곡가에 대해 “신동”, “가곡의 왕” 등 명칭을 붙여 그 작곡가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위에 언급한 “신동”은 모차르트를 지칭한 말이고 “가곡의 왕”은 슈베르트를 말한다. 전체 교과서를 보면 모차르트(W.A. Mozart), 시벨리우스(J.J. C. Sibelius), 슈베르트(F.P. Schubert)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 근세의 불세출의 작곡가 홍난파 선생, 또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 할 수 있는 서정적 작곡가 이수인 선생 및 박판길 선생에 대한 소개는 이 교과서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적인 면에서 볼 때 꼭 시정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즉 위의 인권 개념 분류의 근거 1>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평등권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다.” 미처 생각지 못한 면은 보완 수정하여서 학생들에게 우리의 음악인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이해 시켜 줄 필요성을 통감 하는 바이다.

3. 분석 결과에 대한 대안(예시)

“평등권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시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권리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권리이다. 위의 서술들을 살펴 볼 때 사례 1>을 통해서 인권적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를 대표 할 수 있는 작곡가가 남성 밖에 없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 작곡가의 작품도 눈여겨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 되는 바이다. 사례2> 는 분명 외국 작곡가와 우리 작곡가에 대한 차별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지도의 차이는 시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음악을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과서에 나온 이수인 선생, 박판길 선생, 홍난파 선생을 모르는 학생들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 된다. 따라서 그들의 태어난 곳, 작품수, 작품성향 등을 자세히 소개 해 준다면 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고등학교 사회 인권내용 분석

임상수(서울대 시간강사)

1. 강조하려는 메시지 전달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 권리 (복지권, 인간다운 생활권)에 대한 균형적 시각 혹은 대안적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교과서 내용

pp. 109-110. 더 생각해 보기 “서울은 인구가 줄고, 경기도는 인구가 늘고...”

도시화와 인구집중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눈덩이 효과(snow ball effect)’를 강조하고, 거대 도시로서의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직업과 교통, 통신망의 혜택을 그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땅값과 교통 문제 등으로 인해 신도시 건설이 필요했으며 그 결과 많은 배후도시 주민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서울 출퇴근이 분지 지형으로 말미암은 도로의 병목 현상 때문에 교통지옥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 미흡한 점

- (1) 거대도시로의 인구집중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에 집중된 편의시설과 일자리 등의 유리한 조건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가 지나친 반면에 ‘지방분산화의 비전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의 내용 구성은 집중화와 위성도시 과밀화가 정책과 기획의 미비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필연적인 성장과정의 일부로 느껴지기 쉽다.
- (2)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유층들이 교외의 고급 주택단지로 이주하여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례와 경제적인 약자들이 과도한 주거비용 때문에 도시에서 밀려나 교외 위성도시로 쫓겨가는 사례를 서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 (3)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전원주택붐과 신도시의 신흥 아파트촌을 둘러싼 개발투기 사례를 비교하면서, 거대도시와 배후도시의 문제를 바라보는 분석틀에는 경제적인 분석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음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

○ 교과서 서술상의 보완할 점

교과서의 내용은 마치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 조성의 그곳 주민들의 서울로의

출퇴근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며 필연적인 발전과정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 (1) 배후도시 거주민들의 교육권, 문화권, 복지권들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은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택한 '당연한 불이익'만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2) 서울의 거대도시화와 광역 지역생활권의 형성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기 보다는 인간들의 단기적 안목과 욕심으로 인해 빚어진 인재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교과서 내용

p.128. 휴전선 일대는 여전히 생태계의 보고인가?

비무장 지대와 민통선 일대의 자연 환경이 무분별한 폐수방류, 개간, 자유로의 매연, 관광객의 쓰레기 투기 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통일 후 비무장 지대의 친환경적 개발방향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 미흡한 점

- (1)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개발의 방향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교과서의 의도이다. 이를 강조하다보니 '민통선 주변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 침해와 생존권 위협'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익을 위한 사익의 억제라는 차원과 연계해서 민통선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 문제도 함께 짚어볼 때, 비로소 균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2) 더 나아가 군부대 인접지역 주민, 접도구역, 풍치지구, 스쿨존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산권 제약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그린벨트 제도의 시행이라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나 수자원 확보의 문제와 같은 공익 추구하고 관련된 사례에서는 공익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들의 기본권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충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교과서 삽화의 인물선정에서 인권적 고려가 미흡한 경우

○ 교과서 내용

p.118. 프레온 가스의 오존층 파괴과정 삽화

여성이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삽화를 그려놓고서 프레온 가스가 대기권에서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에 도달하여 오존을 파괴하는 촉매자로 작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 미흡한 점

- (1) 프레온 가스의 오존층 파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에서 굳이 여성의 헤어스

프레이 사용을 예로 들 필요는 없다. 부정적 이미지의 환경파괴자의 사례에 ‘친 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진 여성’을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 혹은 살충제나 공업용 라카 등의 분무제로서의 프레온 가스를 사례로 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2)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온실 효과와 오존층 파괴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대규모 공업단지 등의 삽화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교과서 내용

p.220. 국내총생산의 한계(1):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하면 국내 총생산은 줄어든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국내총생산(GDP)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GDP가 그 사회의 경제활동 수준을 적절하게 대변해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로 걸레질 청소를 하고 있는 여성 가정부에게 남자 고용주가 반지를 들고 청혼하는 그림을 싣고 있으며, 내용 설명에서는 가정 주부가 가족을 위해 하는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은 GDP에서 제외되고 똑같은 일이 음식점, 세탁소 등에서 행해지면 GDP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 총생산을 줄어든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 미흡한 점

- (1) GDP에 포착되는 경제활동과 포착되지 않는 생산적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굳이 ‘여성 가정부와 남성 주인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듯한 사례를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비하의 뉘앙스를 풍기기 쉬운 사례이기 때문이다.
- (2) 단순히 가정에서의 세탁과 용역업으로서의 세탁소에서의 세탁, 집에서 하는 저녁식사와 외식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경제활동과 GDP의 개념 이해를 위한 사례로 충분할 것이다.

○ 교과서 내용

p.198. 사회적 쟁점의 발생 삽화, p.200.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이익갈등의 삽화, p.204 참여자들의 역할 삽화, p.222. 난쟁이 행렬의 삽화, p.301의 우리 학교의 꼴불견 삽화

위의 다섯 번의 삽화에서는 뚱뚱하고 배나온 사각안경의 아저씨가 등장하는데, 공통적으로 부정적 이미지의 역할을 맡고 있다.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 한의사와 약사의 분쟁을 촉발하는 무능한 정부, 부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소수의 부유층,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아도취형의 인물 등으로 그려지고 있어 부정적

인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같은 캐릭터가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된 삽화는 p.20의 지리정보의 중요성 삽화와 p.223의 경제성장 삽화 두 번 뿐이다.

○ 미흡한 점

- (1) 선/악과 긍정적/부정적 이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삽화의 사용에서는 특히 부정적 이미지의 인물 캐릭터 선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서에서는 사각 안경의 머리큰 뚱보 아저씨가 지속적으로 부정적 역할을 많이 맡고 있다. 특정한 외모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심어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2) 교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삽화의 사용에 있어서 남녀의 성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형과 외모 혹은 노소의 연령 문제는 아직 충분히 배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3. 역사적 사실이나 갈등 사례에 대한 서술에서 일방적 사실만을 서술하고 다른 시각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누락시키는 경우

○ 교과서 내용

p.155.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식민지에 진출했던 유럽인들을 선교사, 이주민, 관리, 상인의 네 부류로 구분하고, 이들이 남긴 식민지 지배의 흔적을 영국, 프랑스인들이 진출했던 앵글로 아메리카와 포르투갈, 에스파냐인들이 진출했던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 미흡한 점

“유럽 세력의 확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라는 지도 설명이 실려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 문명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을 학살한 어두운 역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 교과서 내용

p.259. 사익이냐 공익이냐?

일산과 고양지구의 러브호텔 난립 반대 시위 사진을 싣고, 신도시 주민들의 거주권, 교육권 확보 주장과 업소주인들의 재산권 행사 주장을 대비시키고 있다.

○ 미흡한 점

제목을 ‘사익이냐 공익이냐?’로 붙여놓고서, 아파트 주민들의 러브호텔 건립 반

대시위를 '공익 추구'로, 업소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사익 추구'로 단정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 이면에는 아파트 값의 하락을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적 측면도 찾아볼 수 있음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학교예정부지로 묶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투기열풍에서도 소외되었던 땅주인들의 입장도 다루어야 균형적 시각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된다.

○ 교과서 내용

p.204. 참여자들의 역할 - 이익집단, 정당, 언론, 관료, 전문가, p. 277. 시민 운동의 역할

교과서에서는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분쟁의 진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약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충되고, 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분쟁의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중재자로서 시민 단체를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뒷부분의 시민 운동의 역할 부분에서는 시민 단체의 확산이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문제점으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한계점과 '재정 위기와 활동가의 희생'을 지적하고 있다.

○ 미흡한 점

- (1)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의 구별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 (2) 대표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민 단체의 난립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지적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3) 이해 당사자와 정부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시민 단체의 중재라고 하는 논리는 정당성이 부족한 듯하다.

고등학교 기술·가정(1학년) 인권내용분석

최 준 화(서울 난곡중학교)

1.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목의 목적, 특성, 내용 요약

(1) 기술·가정 교과목의 목적

기술·가정이라는 교과명은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6차 교육과정까지 남학생은 기술을, 여학생은 가정을 배워왔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두과목을 하나로 합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분 없이 이수하도록 하였다. 국민공통기본 교과중의 하나인 기술·가정은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배우는 실과,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기술·가정을 포함한다. 6년에 걸쳐서 학습하게 되는 기술·가정 교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의 총괄목표

개인과 가정, 산업 생활의 이해와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가정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2) 하위목표

- ①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일을 경험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습득한다.
- ② 기술과 가정 생활에 관련되는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진다.
- ③ 일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자신의 미래 생활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2) 기술·가정 교과목의 내용

위와 같은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가정 교과서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가 그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 교과서의 내용은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에 해당하는 가정 생활의 설계 단원, 생활기술의 영역에 해당하는 가정생활의 실제, 에너지와 수송 기술, 건설 기술의 기초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10학년의 교과서에는 없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학사의 경우임.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I, II단원은 중단원의 제목까지 지학사와 같음. III단원은 중단원의 이름이 약간 다르지만 다루는 내용은 같음. 다만 IV단원이 1. 건설 기술의 이해 2. 건설 계획과 시공 3. 건설 구조물 모형 만들기로 조금 다름)

- I. 가정생활의 설계
 - 1. 가정 생활 문화의 변화
 - 2. 가족 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 3. 결혼과 육아
- II. 가정 생활의 실제
 - 1. 초대와 행사의 계획과 준비
 - 2. 직물을 이용한 생활 용품 만들기
 - 3.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 III. 에너지와 수송 기술
 - 1. 에너지원의 이용
 - 2. 동력 발생과 이용
 - 3. 자동차의 관리
- IV. 건설 기술의 기초
 - 1. 건설 구조물의 시공 원리
 - 2. 건설 구조물 모형 만들기

(3) 기술·가정 교과서의 특성

위와 같은 목표와 내용을 가진 기술·가정 교과서의 특성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의 실천적 경험과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교과로 기술 산업과 가정 생활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준다.

둘째, 학문적 성격보다는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적 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미래의 가정과 생활의 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남녀의 구별없이 교육하게 되었다.

2.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내용 분석

다음의 인권내용 분석은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명백히

인권의 내용을 잘못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다. 다음의 내용들은 모두 인권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또 약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등에 해당한다. 즉 인권내용의 서술이 미진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교과서 페이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지는 지학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금은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의미함. 숫자는 페이지숫자임.)

● 지11: 표 1-1에서의 단독가구에 대한 설명이 미진. 단독가구에는 혼자사는 노인도 포함될 것인 바 노인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미흡함.(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 지12: 자녀 수가 줄어들어 따라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 태도와 과잉 보호가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들이 갖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현실에 대한 지적은 없음.(아동의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지14: 식생활의 변화 중 패스트 푸드점의 번창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패스트 푸드가 현대인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음식은 인간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영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지21: 그림1-13에서 과학 기술의 발달로 현대에는 기계의 힘으로 기후 조건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자연 환경적인 요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음. 이는 자연개발이나 환경보존이나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인류가 환경보존에 더 중요성을 두려는 경향과 반하는 듯한 오해를 줌.(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지38: 부모됨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고 있지는 않음. 더 나아가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와 부모가 없을 경우 아동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음. 또한 부모의 역할은 덕목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도 부각되어야 할 것임.(아동의 전반적인 권리)

● 지40: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 더 나아가서 배아복제 등에서 태아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부족함.(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지45: 다양한 분만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요즈음 병원에서의 일반적인 분만 방법이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과 관련하여 아기와 임산부에게 가장 인간적인 분만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자세가 필요함.(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 지127: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서술. 자연연료와 다르게 이들 연료가 가

지는 환경과괴적인 성격을 더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음.(인간다운 생활권)

● 지169: 올바른 운전자세에 대한 내용. 특히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사망하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금11-233: 전 교과서에 걸쳐서 삽화가 꽤 많이 그려져 있는데 등장하는 여성들은 거의 치마를 입은 것으로 처리되고 있음. 운동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 몇 그림에서만 바지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치마를 입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리는데 미흡함.(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 금12: 탐구활동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원의 역할 분담,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등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서술하여 마치 여성의 경제활동이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 원인인 듯한 인상을 주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긍정적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함.(평등권)

● 금17: 가공 식품의 증가와 미래의 식생활 부분에서 미국 중심의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확대가 자국은 물론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고 있음.(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금22: 소비자의 주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음. 또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윤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면 더욱 좋을 것.(청구권)

● 금28: 보충학습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태도에 대한 내용. 여생을 보람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인이 가져야 할 태도만을 언급하고 있음.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제도와 법의 정비, 사회적인 인식과 관심의 필요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야 함.(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 금31: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꿈, 가족 축구단을 구성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평등권)

● 금42: 부모됨이 의미를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임.(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권 등)

● 금42: 표1-9에 나타난 역할 조정부분.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직업이나 취미 생활 등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그러지 않으려면 부부간에 역할조정을 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아이의 양육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을 지적해야 할 것임.(노동권, 인간다운 생활권)

● 금46: 출산과정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음.

● 금53: 놀이와 장난감 부분에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가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금54: 유아와 아동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아동의 권리를 알게 하여야 함.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음.(전반적인 아동의 권리)

● 금59: '여아는 한 두 명의 절친한 단짝과 어울리지만 남아는 많은 수가 함께 활동하고 집단에 충성하는 특징이 있다. 남아와 여아는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서로 못살게 굴기까지 한다.' 이러한 서술은 여아와 남아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 친구와 우정을 쌓는 유형은 아이들의 내적 성향에 관계되는 것이지 성별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평등권)

● 금131: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금135: 수소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등 자연연료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치 평가할 필요가 있음.(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금168: 운전예절.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태도를 지닐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금191: 댐을 건설할 경우 수몰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청구권)

● 금196: 학교건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한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함.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곳임.(학생들이 갖는 전반적인 권리)

● 금232: 어린이 생일 양식 상차림의 예에서 미니 햄버거, 소시지 베이컨 햄말이, 피자 등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식은 권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3. 분석의 결과와 인권교육의 문제점

위에서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내용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오류는 첫째 단원에서 나왔다. 이는 나머지 단원이 생활기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술의 습득과 관련되어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반면 첫 번째 단원은 가족과 일에 대한 이해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기술과 기능의 습득보다는 가정과 일에 대한 일정한 태도와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된다 하겠다.

또 첫째 단원이 가정생활의 바람직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유엔에서 이미 만들어진 인권관련 기구들과 선언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권은 주로 약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난민, 여성, 아동, 유색인종, 이주노동자 등이 그들이다. 이 단원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대상은 바로 아동이다. 어린이들은 특히 가정에서 학교에서 비인

간적인 대우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나이에 따른 서열을 중시하는 관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도 많은 부분이 부모의 역할과 부모됨과 같이 부모 중심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계어린이 인권선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아이들이 갖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갖는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의 권리도 제대로 표현되고 있지 못하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 50%대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를 문제점을 낳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고 여성의 상징적인 모습을 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하다 하겠다. 아이를 임신한 여성, 아이를 출산할 때의 여성,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알게 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가정이 주로 핵가족 중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아이와 여성들만 아니라 노인도 사회적 약자로서 충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노인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정생활의 설계에서 노인들에 대한 언급은 너무 빈약하다.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4. 인권교육의 개선점 및 강화방안 제언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안식처이고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노인으로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식의 권리와 의무, 부모의 권리와 의무, 노인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서로서로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실천은 앎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말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하관계 속에서 부모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자식의 덕목인 것으로 알아왔던 동양의 관습은 나름대로 아름다웠지만 지나칠 정도의 체벌과 학대로 아이들의 인권이 짓밟히기 쉽다는 점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0년에 발효한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어린이 청소년을 아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함)은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세계 최대의 인권조약으로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1년 이 선언에 가입하였다. 이 선언은 아이들의 권리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 특징적인 것은 그러한 내용을 아이들이 알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제42조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

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생활을 이야기할 때 가정에서 아이들이 갖는 권리를 유엔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서 아이들이 갖는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가정·기술 교과서에서 기술상 인권과 명백히 반하는 내용은 없지만 이와 같이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오류가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는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실제 문제와 유사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 볼 수 있게 한 탐구과제(예를 들면 지25: 주택 마련에 대한 설계를 해 보자)의 형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으로서 학생들이 겪어 온 반인권의 구체적인 예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에 관한 지식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암기하게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반인권에 해당할 것이다.

【 부 록 】

■ 집필진 연락처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집필분야
<인권교육기본지침서>						
책임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	011-473-8416 (C) 031-370-6625 (O)	kangsw@hanshin.ac.kr	지침서 총괄
<초등학교 분석보고서 집필진>						
책임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3475-2431(O) 016-760-2431(C)	jrhur@ns.seoul-e.ac.kr	연구총괄
공동	문종국	서울광희초	교사	2238-8456(O) 016-221-6387(C)	mjk5050@empal.com	국어 1,6 체육 4,5
"	강희철	서울수암초	교사	3392-4277(O) 016-756-0128(C)	khc123@chollian.net	도덕 3,6 영어 3,4
"	박용조	서울신정초	교사	652-4754(O) 016-242-4755(C)	pyjyhs@hanmail.net	사회 4,5 음악 4,5
"	정순원	KERIS	연구원	3488-6270(O) 011-9019-7802(C)	swjung@keris.or.kr	사회 3,6 음악 3,6
"	조태원	서울구의초	교사	447-9324(O) 019-496-9812(C)	j7027@edunet4u.net	국어 2,5 미술 3,6
"	엄형수	서울공항초	교사	664-8008(O) 018-343-1243(C)	um1243@hanmail.net	국어 3,4 미술 4,5
"	박기범	서울구산초	교사	016-347-9423	demake@chollian.net	수학, 실과
"	박용신	서울본동초	교사	017-242-5194(C)	sini56@hanmail.net	과학 체육 3,6
"	이지혜	서울대방초	교사	833-2860(O) 011-205-7419(C)	kallen@hanmail.net	마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	곽혜송	석촌초등학교	교사	016-9767-3467	igagol@hanmail.net	도덕 4,5 영어 4,5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집필분야
<중학교 분석보고서 집필진>						
책임	이명준	교육과정평가원	국제협력 부장	hp:018-318-0441 O:3704-3612	mjlee@kice.re.kr	총괄
공동	왕규용	경원중	교사	hp: 011-218-7825 O: 593-4206	wky1@hitel.net	국어
"	황기현	대경중	교사	hp: 017-277-8447	logos@empal.com	도덕
"	조정권	광희중	교사	hp: 011-9366-8427 O: 2298-0251	idbal@hanmail.net	체육
"	김택환	강남대학 음대	겸임교수	hp: 017-277-0509 o: 585-1814	kth56@hananet.net	음악
"	고승혜	청담중	교감	hp: 019-435-4505 O: 541-1645	gosaari@hanmail.net	미술
"	정선아	원목중	교사	hp: 016-259-6825 O: 3421-0181	dolkong-7@hanmail.net	영어
"	이회경	서울여고(청량중)	교사	hp: 019-9153-8579 O: 703-2211	wkgreen@hanmail.net	수학
"	김현숙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hp: 017-336-9943 O: 3704-3777	oh55@kice.re.kr	사회/국사1
"	정승희	봉원중	교사	hp: 019-248-6475 O:879-1543, 884-8498	chungseung @hanmail.net	과학
"	이혜경	상원중	교사	hp: 016-366-5926 O: 930-0762	lhg0801@hanmail.net	기술·가정
<고등학교 분석보고서 집필진>						
책임	박효종	서울대학교	교수	O:880-7729 H:591-5220	parkp@snu.ac.kr	총괄
공동	조일수	서울대학교	강사	hp:017-263-5820 H: 931-5820	ilsoo@unitel.co.kr	도덕, 과학
"	임상수	서울대학교	강사	hp: 019-299-3604 H: 592-3604	sslim67@yahoo.com	사회, 체육
"	이은규	인천송도고	교사	hp:018-354-4207 O:032-832-3412	yliss@netian.com	국어, 수학
"	조진호	안양과학대학	강사	hp:017-203-7681	sunrise1@empal.com	영어, 국사
"	최준화	난곡중	교사	hp:019-9757-0829 O: 838-803	choijh03@netian.com	음악,미술 기술·가정

■ 2종 도서 판매순위별 출판사 명

학 교 급 별	과 목 명	권 별	출 판 사 명		비 고
			1위	2위	
중 학 교	사 회	1	금 성 출 판	중앙교육	
		2	금 성 출 판	중앙교육	
	수 학	7-가	디 덤 돌	중앙교육	
		7-나	디 덤 돌	중앙교육	
		8-가	디 덤 돌	중앙교육	
		8-나	디 덤 돌	중앙교육	
	과 학	1	(주)지학사	금성출판	
		2	(주)지학사	금성출판	
	기 술·가 정	1	두 산	(주)지학사	
		2	두 산	(주)지학사	
	체 육	1	두 산	금성출판	
		2	두 산	금성출판	
	음 악	1	두 산	세광음악	
		2	두 산	세광음악	
	미 술	1	교 학 사	두 산	
		2	교 학 사	두 산	
	영 어	1	두 산(장)	천재교육	
		2	두 산(장)	천재교육	

학 교 급 별	과 목 명	권 별	출 판 사 명		비 고
			1위	2위	
고등학교	사 회		중앙교육	디 덤 돌	
	수 학	10-가	중앙교육	(주)지학사	
	수 학	10-나	중앙교육	(주)지학사	
	과 학		중앙교육	금성 출판	
	기 술 · 가 정		금성출판	(주)지학사	
	체 육		교 학 사	보 진 재	
	음 악		세 광 음악	대한교과서	
	미 술		대한교과서	교 학 사	
	영 어		능률영어(찬)	(주)지학사	

■ 인권관련내용 분석을 위한 헌법기본권 조항 분류

강희철(국제법박사, 서울교대 강사)

I. 인권 관련 내용 분석에서의 국제법학과 헌법학의 학제적 접근의 당위성과 유용성-국제법의 관점에서(ICJ 38조)

II.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위한 인권의 분류와 내용

1. 기본권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헌법 제11조-36조에 걸친 개별적 기본권의 보장으로 실현

헌법 제37조 1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될 자유와 권리

A규약 전문: 인간의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

제1조 1항 자결권-정치적 지위결정,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 추구

2항 천연의 부와 자원처분권, 생존의 수단 박탈금지

B규약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인간의 존엄에서 유래.....시민적·정치적 자유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자유로운 인간.....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

제1조 1항 자결권-정치적 지위 결정,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추구

2항 천연의 부와 자원처분권, 생존의 수단 박탈금지

2. 평등권

헌법 제11조 1항 법앞의 평등-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2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3항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보호,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금지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정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

헌법 제31조 1항 교육의 기회균등

A규약 제2조 2항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제권리의 행사보장

- A규약 제3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수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A규약 제10조 1항 혼인의 자유
- B규약 제2조 1항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 의견, 국민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에 의한 차별없이 본규약상의 권리를 존중 및 확보
- B규약 제3조 시민적·정치적 권리확보를 위한 남녀평등의 권리확보
- B규약 제16조 법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
- B규약 제23조 2항 혼인연령에 달한 남녀가 혼인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
 - 3항 혼인-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없이 성립하지 않음.
 - 4항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의 평등을 확보
- B규약 제24조 1항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국민적·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한 차별없이 보호를 받을 권리
- B규약 제26조 법앞에 평등-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 의견, 국민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자에게 보장.
- 제27조 소수민족에 속하는 자는 자기의 문화 향유, 종교 표명·실천, 언어사용권을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다.

3. 자유권적 기본권

가. 인신의 자유권

(1) 생명권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존중
- 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
- 헌법 제37조 1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경시 금지
- A규약 제1조 2항 생존의 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 B규약 제1조 2항 생존의 수단 박탈금지
- B규약 제6조 1항 생존할 고유의 권리,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 2항 사형-권한있는 재판소에서 언도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
 - 3항 집단학살죄의 경우 본규약을 이용한 의무면제해석금지
 - 4항 사면, 감형을 구할 권리
 - 5항 18세미만자, 임신부에 대한 사형금지
 - 6항 사형의 폐지를 지연, 방해하기 위한 본규약의 원용금지
- B규약 제20조 1항 전쟁을 위한 선언금지
 - 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을 구성하는 국민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창도금지.

B규약 제24조 1항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국민적·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한 차별없이 보호를 받을 권리

2항 모든 아동은 출생후 즉시 등록되며 이름을 가져야만 한다.

3항 아동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1항

(3)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1항 법률에 의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의 보장, 강제노역금지

2항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

3항 영장제도

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5항 구속이유등고지제도

6항 구속적부심사제

7항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헌법 제13조 1항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3항 연좌제의 금지

헌법 제27조 3항 신속한 공개재판청구권

4항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B규약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취급 혹은 형벌금지
본인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인 실험금지

B규약 제8조 1항 노예상태금지-노예제도, 노예매매금지

2항 고역에의 복역금지

3항 ㉠ 강제노동금지

B규약 제9조 1항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자의적인 체포, 구금 금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유박탈금지

2항 체포시 고지의무

3항 범죄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신속하게 재판관 또는 관
헌의 면전에 연행되어야 하며, 상당한 기간내에 재판을 받든
가 석방될 권리를 가짐.

미결수구금원칙금지

4항 구속적부심제도

5항 위법한 체포,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B규약 제10조1항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인간의 고유한 존엄을 존중하여 취급

2항 ㉠ 무죄추정의 원칙

- ③ 미성년의 피고인-성인과 격리, 신속하게 심판에 회부
- 3항 감독제도-수인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인의 처우를 포함
- 미성년자-성인과 격리, 연령과 법률상의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부여

제11조 계약상 의무이행불능만을 이유로하는 구금금지

B규약 제14조 1항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2항 무죄추정의 원칙

3항 ① 본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고지받을 권리

② 방어준비를 위한 시간과 편의부여, 변호인과의 연락

③ 부당하게 지체되는 재판금지

④ 본인출석하에 재판, 변호인을 통한 자기방어, 지급수단이 없는 경우 변호인의 할당

⑤ 상대방의 증인 심문, 자기증인의 출석과 심문인정

⑥ 언어통역의 원조

⑦ 불리한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강요금지

4항 미성년자는 연령을 고려, 갱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망

5항 상급재판소에의 유죄의 결정과 형벌재심사권

7항 일사부재리의 원칙.

B규약 제15조 1항 형벌불소급의 원칙

행위시의 형벌보다 중한 형벌을 과할 수 없음.

범죄행위시보다 경한 형벌을 과하는 규정이 설정된 경우 범죄자는 그 이익을 받아야 함.

2항 국제사회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실행시에 범죄로 되고 있는 작위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님.

나. 사생활자유권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자기정보관리통제권 포함)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21조 4항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 권리침해시의 피해배상청구

(2) 주거의 자유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시 영장제시

(3)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B규약 제12조 1항 거주, 이전의 자유

2항 퇴거의 자유

4항 자국에의 입국할 권리

B규약 제13조 외국인의 추방-법률에 의함

(4) 통신의 자유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B규약 제17조 1항 사사·가족·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을 권리
명예와 신용을 공격받지 않을 권리

2항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다. 정신적 기본권

(1)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B규약 제18조 1항 사상,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

2항 국교부인, 정교분리

B규약 제18조 1항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예배, 의식, 행사와 포교에 의하여 자기의 종교 또는 신앙을 표명할 자유 포함

2항 종교에 대한 강제금지

4항 양친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정후견인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아동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

(3)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 1항 언론, 출판의 자유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 검열금지

3항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 및 신문기능보장에 대한 범정주의

4항 타인의 명예,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금지

B규약 제19조 1항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

2항 표현의 자유-구두, 서면, 인쇄물, 예술품의 형식 또는 자기가 선택한 기타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수리하고 전달할 자유 포함.

(4)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1항 집회, 결사의 자유

2항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

B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22조 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보호

4. 경제적 기본권

가. 재산권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보장, 사유재산제의 한계에 대한 법정주의

2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3항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헌법 제22조 2항 지적재산권보호

A규약 제1조 2항 천연의 부와 자원 처분권-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B규약 제1조 2항 천연의 부와 자원처분권, 생존의 수단 박탈금지

나.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다. 소비자의 권리

헌법 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보장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7조 1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 권리 경시금지의 보완적 규정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의 보장

헌법 제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헌법 제36조 3항 보건의 권리

헌법 제26조 청원권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 정치적 기본권

가. 정치적 자유

헌법 제21조 1항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

나. 참정권

헌법 제24조 선거권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금지

B규약 제25조 다음의 사항을 행할 권리와 기회 부여

-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자를 통한 공무운영에의 참여
- ㉡ 평등·보통·비밀투표에 의해 행해지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보장한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선출될 것
- ㉢ 평등의 조건하에 자국에서 공무에의 취임

다. 그 밖의 정치적 활동권

소비자보호, 환경운동, 공해추방 등을 위한 주민운동권

6. 청구권적 기본권(권리보장적 기본권)

가. 청원권

헌법 제26조 1항 국가기관에의 청원

2항 국가기관의 청원심사의무

나.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2항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

3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

5항 재판절차진술권

다. 국가배상청구권

헌법 제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의 이종배상금지

라. 국가보상청구권

헌법 제23조 3항 손실보상청구권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B규약 제14조 6항 형사보상청구권

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구조

7. 사회적 기본권

가.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

헌법 제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A규약 제15조 1항 당사국이 인정할 권리

- ①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 ②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
- ③ 작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향수할 권리

2항 과학과 문화의 보존발전과 보급을 위한 조치

3항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불가결한 자유 존중

4항 과학적·문화적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접촉과 협력

나. 사회보장 수급권

헌법 제34조 2항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4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5항 사회복지청구권(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요보호자)

6항 재해예방, 국민보호

A규약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A규약 제10조 1항 부양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맡고있는 가정보호 및 원조

2항 출산전후의 임신부보호-유급휴가 또는 사회보장급부를 수반
한 휴가부여

3항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과 청소년보호 및 원조-경제적·사
회적 착취, 유해·위험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노동에의 연
령제한

A규약 제11조 1항 적당한 생활수준의 향수

2항 기아로부터의 자유

① 음료의 생산·보존과 분배의 방법 개선

② 세계의 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 확보

B규약 제23조 1항 가정의 보호

4항 혼인해소의 경우 아동보호

다. 근로의 권리

헌법 제32조 1항 근로의 권리,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

A규약 제6조 1항 근로의 권리

2항 완전고용의 달성-기술 및 직업의 지도와 훈련계획, 기술적 방
책 포함

A규약 제7조 노동조건을 향수할 권리

① 최소한의 임금

· 공정한 임금,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여자에게 열등

하지 않은 노동조건보장

· 상당한 생활보장

- ②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 ③ 선임순과 능력외의 차별없는 승진기회보장
- ④ 휴식, 휴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적인 유급휴가 및 공휴일에 대한 보수

A규약 A규약 제10조 2항 출산전후의 임신부보호-유급휴가 또는 사회보장급부를 수반한 휴가부여

3항 아동과 청소년보호 및 원조-경제적·사회적 착취, 유해·위험한 노동금지, 노동에의 연령제한

라. 근로3권

헌법 제33조 1항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항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3항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A규약 제8조 1항 당사국의 의무

① 단결권보장

② 노동조합이 전국적 연합,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 및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이 국제적인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할 권리

③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제한

④ 동맹파업을 할 권리-각국의 법률에 따름

2항 군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제한-각국의 법률에 따름

3항 ILO의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의 보장내용 저해금지

B규약 제22조 1항 결사의 자유-노동조합을 결성, 가입권

2항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에 대한 제한-국내법에 따름.

3항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조약의 보장을 저해하려고 본규약을 해석, 적용하는 것 금지.

마.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1항 교육을 받을 권리

2항 교육을 받게할 의무

3항 무상교육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5항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6항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A규약 제13조 1항 교육에 대한 권리

2항 당사국의 인정사항

- ㉠ 초등교육-의무적, 무상
- ㉡ 중등교육-무상교육의 점진적 채용, 모든 사람에 개방
- ㉢ 고등교육-모든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
- ㉣ 기초교육-장려 내지는 강화
- ㉤ 학교제도의 발전추구, 장학금제도설치, 교육직원의 물질적 조건 개선

3항 부모, 법정보호자의 학교선택권, 아동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4항 개인 또는 단체의 교육시설 설치 및 관리권 간접 배제

A규약 제14조 무상의 의무교육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및 채용

마. 환경권

헌법 제35조 1항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35조 3항-국가의 주택개발정책,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바. 건강권

헌법 제36조 2항 모성보호

3항-보건권

A규약 제12조 1항 건강을 향수할 권리

2항 조치

- ㉠ 사산율과 유아동의 사망의 감소, 아동의 건강한 발육
- ㉡ 환경위생과 산업위생의 모든 분야 개선
- ㉢ 전염병·풍토병·직업병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와 박멸
- ㉣ 의료와 간호의 확보